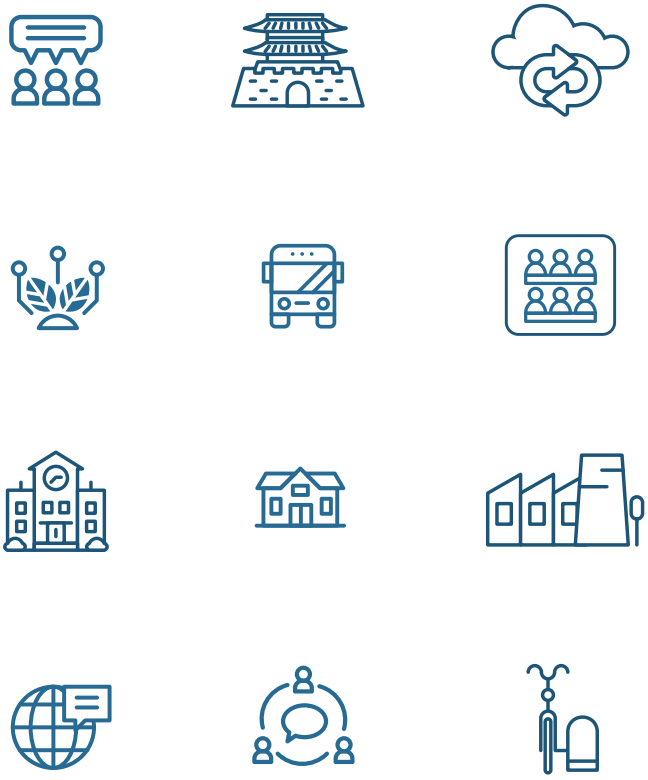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5-제2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목 차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2025년도 말산업육성 시행계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1

2.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 개선 (국토교통부) ···· 14

3. 2025년 생활·학교체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18

4. 2025학년도 학교복합시설 1차 사업 공모 (교육부) ····· 24


## Ⅱ. 지자체 추진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1. 시니어 일자리 지자체 운영 사례 (인천광역시 외) ····· 31

2.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경기도) ····· 37

3.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통역앱 지원 (경상남도) ····· 40

4. 2025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확대 (전라남도) ····· 44

# 목 차

##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방안 (지방행정연구원) … 49

2. 특별자치시도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개정안 마련 (지방행정연구원) … 56

3.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64

4. 고령화 시대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국토연구원) …… 74

5. 야영장 기본시설의 전기 사용량 기준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83

6.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운영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90


##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온누리상품권의 소상공인 사용비중의 감소 우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99

2. 영화상영관 입장권 영화발전기금 수입 문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05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교육위원회) ····· 111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1. 2025년도 말산업육성 시행계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한 말산업의 전변 확대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말 복지 제고방안 마련 및 실증사업 확대**

### 1 추진 근거

○ 「말산업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3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25년 시행계획 수립('25. 2. 12.발표)

*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 1차('12년~'16년), 2차('17년~'21년), 3차('22년~'26년)

### 2 추진배경

○ 승마 대중화와 아울러 농촌 관광 등 지역 연계성을 높여 지역민 소득 제고 기여 및 퇴역 경주마의 활용을 넓혀 말산업 활성화에 도모

### 3 주요내용

□ (생활승마) **능력별·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승마 활성화

① **생활 승마인** 및 **유소년 대상** 승마대회 **참가 기회 마련**을 통한 정기 승마인구 지속 확대

* 정기승마인구 확대 : ('22) 59천명 → ('23) 67 → **('25년) 75 → ('27년) 120천명**

② 교육부 교육과정에 발맞춰 **정규교과 '승마 시행학교' 전국 확대,** 기승능력인증제를 기반으로 **능력별·단계별 학생승마 지원**

* '25년부터 정규교과 승마수업 시행지원을 순차적으로 강화·유소년 승마 활성화
: '25년(초3~4, 중1, 고1), '26년(초5~6, 중2, 고2), '27년(중3, 고3)

** 정규교과 승마 참여학생 : ('23) 1,056명 → ('24) 2,110명 → **('25년) 2,300명**

③ **관광·체험형 복합승마** 등의 보급을 통한 국민적 승마 관심 확산, **도시민 승마체험 지원 및 트레킹(40㎞ 이하) 종목** 등 생활 승마인 중심 신규 승마대회 운영

* 민·관 협력 도심 승마체험(3.7억원), 농촌체험·지역관광 연계 승마상품(2억원) 등 운영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민간협력) **승마시설 경영여건 개선 지원** 등으로 민간 협력 강화

① 승마교관 등 신규 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② 승마시설 신설·개보수 지속 지원, **현장 컨설팅** 실시

③ 말산업에 대한 정책 의견 수렴 등 말산업 **협의체*** **운영**

* 말복지증진추진협의체(농식품부, 지자체, 마사회,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외) 및 말복지위원회(마사회, 산업관계자, 동물보호단체) 운영

□ (성장동력) **말산업 특구별 특화사업을** 통한 거점지역 경제 활성화

① 특구별 공모사업 발굴·지원 확대 및 **거점 역할 수행** 관련 평가 강화

* ('24) 인센티브 9억, 공모사업 3억원 → **('25) 인센티브 8억, 공모사업 4억원**

□ (**말 복지**)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말 복지 제고 노력**

①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4년) 실태조사 및 복지증진 실증연구 → ('25년) 감시·구호체계 구축 추진

② 퇴역 경주마 승용전환 지원 확대 및 말 자원 활용 **치유승마** 기반 구축

* ('24년) 말을 활용한 치유산업 활성화 실증연구 → ('25년) 치유승마 시범 추진운영 등 후속조치

③ 말 복지 **가이드라인 현장적용**을 통한 국민의 말 복지 인식 제고

* 말 복지 컨설팅 확대,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자 복지 교육 이수 의무화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축산과]

○ 2023년 말산업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24.02.)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 산업 규모는 3조 1,934억원으로 '경마'가 1조 7,488억원로 가장 비중이 큼. 말 산업이 주로 한국마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경마 산업에 의존하는 구조로 투자와 발전을 주도해 오고 있음

○ 현재 **승마, 관광, 재활 등 다양한 말산업 다각화가 미흡한 상황**으로 생활승마 입문자 및 승마인 확산 저조, 말 복지 제고 방안 필요성 제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국민 레저로서 승마 문화 조성 및 농촌 활성화를 목표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함 [참고 1]

○ **전북자치도**는 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2018년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3년 기준 관련 사업체는 180곳, 말 두수는 1,407두(전국 4번째) 규모임.「전라북도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21~'25년)」에 따라, **'25년까지 승마장 30개소, 유소년 승마단 8개단, 정기승마인구 4천명 확대** 등 목표를 수립함 [참고 2]

○ 향후,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말 생산·조련, 레저관광을 결합한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5년**에는 **말산업 육성지원 관련 9개 사업에 총 27억원 예산**을 투입함 (말산업 특구, 전문인력 양성, 유소년승마단 운영 등)

○ 그러나, 초창기 국비 50억원 투입 등 당시 말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전북이 말산업 특구로써 큰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1]. 최근 익산과 완주에 공공승마장이 추가 개장되었는데, 승마인구 확대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등 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북**의 경우, 경기·경북·제주와 더불어 말산업 특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남(4,083명), 전남(5,066명) 지역보다 정기승마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23년 기준) [참고 3]

○ 전북이 아직 후발주자로 말 산업 규모는 작지만,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말산업복합단지가 조성되면 말산업 특구지역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면 **마사회 전북 이전을 위한 기관별 맞춤 유치 전략 및 추진 노력**이 필요함

1) (전북) 탄력 잃은 말산업, 동물복지와 함께 성장해야...(전주MBC 보도자료, 250112)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마지막으로, 작년 10월 충남에서 발생한 말 학대·방치 사건은 오늘날 말 복지 현실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동물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말산업 역시 그동안 전무하던 **동물복지 지침의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서는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 관리 체계 및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임. 전북자치도 역시 말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제주 말구조보호센터 '생츄어리' : 불법 도축현장에 잡혀 온 퇴역마, 경주 은퇴마 등을 구조해 최상의 조건에서 구조된 말을 치유하는 국내 유일의 말 구조 보호센터임

○ 승마 체험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업 속 말 복지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말 산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 참고1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및 '25년 지원예산 (농식품부)

## □ 제3차('22~'26)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추진 전략 및 과제

**비전**

**말과 함께, 국민 즐거움과 미래가치 창출**

- 더 가까운 馬, 더 든든한 馬, 더 따뜻한 馬 -

**목표**

| 경제적 목표 | 사회적 목표 |
|---|---|
| ▪ 승마산업 규모 5,000억원<br>▪ 승마산업 일자리 9,000명<br>▪ 정기승마인구 80,000명 | ▪ 말이용 만족도 향상<br>▪ 말산업 가치 제고 |

**전략**

| 즐기는 말문화 확산 | 말산업 가치 창출 확대 | 말산업 사회공헌 강화 |
|---|---|---|

**추진과제**

| 즐기는 말문화 확산 | 말산업 가치 창출 확대 | 말산업 사회공헌 강화 |
|---|---|---|
| 1 정기 승마인구 확산 | 1 국산마 경쟁력 강화 | 1 재활·힐링 승마 활성화 |
| ❶ 승마대회 체계화 | ❶ 국산 승용마 개량 | ❶ 재활 프로그램 표준화 |
| ❷ 학생승마 생활체육화 | ❷ 말 표준 조련시스템 구축 | ❷ 공공승마시설 중심 재활승마 확대 |
| ❸ 유소년 승마지원센터 설치 | ❸ 국산 승용마 브랜드 도입 | ❸ 힐링 승마 육성체계 마련 |
| 2 다양한 승마문화 조성 | 2 말산업 유통 활성화 | 2 말 동물복지 선도 |
| ❶ 다채로운 말 체험프로그램 확대 | ❶ 말 유통 · 이력 관리 체계화 | ❶ 말 복지 가이드라인·인증제 도입 |
| ❷ 관광·체험형 복합시설 등 보급 | ❷ 온라인 등 말 거래시스템 다양화 | ❷ 경주퇴역마 종합관리체계 구축 |
| ❸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 강화 | ❸ 말 활용 다양화 | ❸ 말 종합방역체계 구현 |
| 3 안전한 승마환경 강화 | 3 말산업 인력 전문화 및 취·창업지원 강화 | 3 사회 공익 기능 확대 |
| ❶ 안전한 말 이용체계 구축 | ❶ 말산업 전문인력 육성 | ❶ 말 관련 공익사업 확대 |
| ❷ 우수 승마시설 지정제 운영 | ❷ 말산업 취·창업 지원 강화 | ❷ 말산업 관련 민관협력 강화 |
| ❸ 맞춤형 기승프로그램 보급 | ❸ 말산업 자격제도 체계화 | ❸ 건전한 말 문화 조성 |

## □ 2025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지원예산 (농식품부)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지원 비율 (국:지:자) | 예산 | 지원 물량 |
|---|---|---|---|---|
| 합계 | | | 16,141 | |
| 생활승마 활성화 | | | 10,285 | |
| | 기승능력인증제 운영 | 100:0:0 | 350 | 인증본부 운영, 민간 승마시설 인증제 운영 지원 |
| | 학생승마 지원 | 30:40:30 | 5,775 | 일반승마 52,048명, 사회공익 승마 3,756명 |
| | 유소년 승마단 운영 | 50:50:0 | 900 | 48개소 지원 |
|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 30:30:40 | 500 | (외승) 25개소 지원<br>(트레킹) 7개 지자체, 2,000명 |
|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 40:40:20<br>융자 30~100 | 960<br>600 | (신설_2년차) 3개소(공공 1, 민간 2) |
| | 승마대회 지원 | 50:0:50 | 1,200 | 40개 승마대회 지원 |
| 말산업 경쟁력 제고 | | | 871 | |
| | 승용마 조련 지원 | 40:40:20 | 250 | 125두 지원 |
| | 승용마 개량 지원 | 100:0:0 | 130 | 62농가 지원 예정 |
| | 승용마 품평회 | 100:0:0 | 435 | 품평회 3회 실시 |
| | 생산농가 역량강화 | 100:0:0 | 56 | 승용 조련 기술 보급, 현장컨설팅 |
| 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 | | 2,132 | |
| | 말산업 전문 교육기관 지원 | 50:50:0 | 440<br>275 | 전문인력 양성기관 11개소 |
| | 전문인력 교육 및 취·창업 | 100:0:0 | 952 | 승마지도자 인건비, 창업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
| | 말산업 전문 자격제도 운영 | 100:0:0 | 465 |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 제도 운영 |
| 산업기반 강화 | | | 1,893 | |
| | 말산업 특구 지원 | 50:50:0 | 1,200 | 말산업 특구 4개소 |
| | 말산업 연구 및 실태조사 | 100:0:0 | 450 | '25년 말산업 실태조사 실시 |
| | 말산업 정책 수립·관리 | 100:0:0 | 243 | 정책 수립·관리, 말산업 컨설팅 |
| 말 복지 증진 | | | 960 | |
| | 퇴역마 승용전환 등 지원 | 100:0:0 | 550 | 말 복지 증진, 퇴역마 용도다각화, 도심승마체험 |
| | 말등록 및 이력관리 | 100:0:0 | 410 | 말 등록, 말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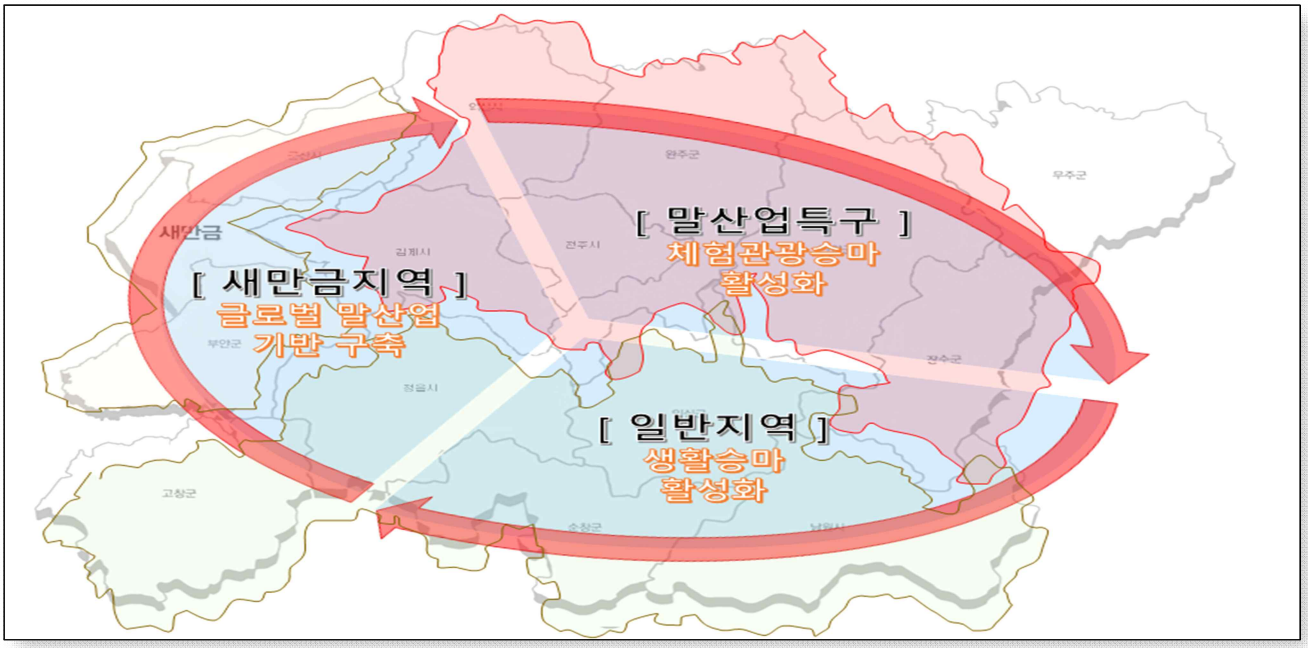
## 참고2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말산업육성 추진방향 (2021~2025)

**방향** : 말산업 육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목표**

| | | | |
|---|---|---|---|
| ◦ 말 사육두수 | (2020) 1,525두 | → | (2025) 1,800두 |
| ◦ 승마시설 | (2020) 25개소 | → | (2025) 30개소 |
| ◦ 유소년 승마단 | (2020) 5개단 | → | (2025) 8개단 |
| ◦ 정기승마인구 | (2020) 3,783명 | → | (2025) 4,000명 |

| 추진과제 | 말산업 기반구축 |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승마대중화 | 지속 성장체계 구축 |
|---|---|---|---|
| 세부과제 | ○ 말산업특구 활성화<br>○ 승마 인프라 구축<br>○ 말산업 대표관광지 육성<br>○ 전문 승용마 생산농가 육성<br>○ 승마길 조성 | ○ 학생승마체험 확대<br>○ 유소년 승마단 육성<br>○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구축<br>○ 전국 승마대회 유치<br>○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br>○ 안전 승마체험 환경 조성 | ○ 다양한 말문화 축제 운영<br>○ 말산업 홍보 강화<br>○ 말산업전문인력 양성<br>○ 말산업 활성화 협의체 운영<br>○ 새만금 말산업인프라 구축 |



## 참고3 2023년 말 자원 및 사업체 실태조사 요약 (농식품부(2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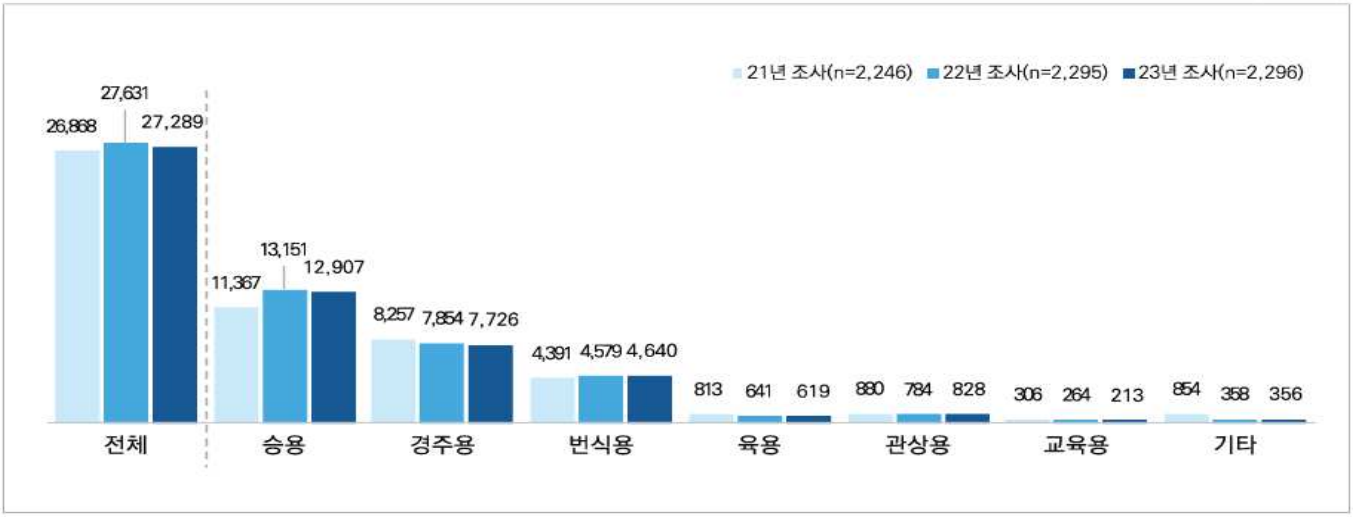

### ▶ 2023년 주요 지표 결과

#### 1) 말자원 조사

- 말사육 두수를 용도별로 보면, **승용 12,907두**, 경주용 7,726두, 번식용 4,640두 등의 순임
- 전체 **말사육 두수의 54.2%**는 **제주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내륙 지역은 '승용' 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제주 지역은 '경주용' 과 '번식용' 의 비중이 높음

[그림 3-1] 용도별 사육 두수

(단위 : 두)




## 2) 말산업 사업체 조사

- **2023년 말 보유 사업체는 2,339개소**로 전년 대비 2개소 감소하였으며, 말 미보유 사업체는 343개소로 전년 대비 16개소(4.9%) 증가함
- 2023년 전체 승마시설은 전년에 비해 1개소가 증가함. 이중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283개소(57.9%)**이며, 체육시설 승마장은 140개소(28.6%), 기타 승마시설은 66개소(13.5%)임
- **2023년 정기승마인구 수**는 전년 대비 7,981명**(13.6%) 증가한 66,640명**이며, **체험승마 인구**는 16,808명(3.4%) 증가한 507,300명으로 **전체 승마인구의 88.4%**를 차지함

[표 2-7] 승마인구 변화

(단위 : 명, %)

| 구 분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A) | 2023년 (B) | 증감 B-A=C | 증감 C/A*100 |
|---|---|---|---|---|---|---|---|---|---|---|---|---|---|---|---|
| 총계 | | | 778,316 | 811,672 | 873,380 | 938,422 | 948,714 | 810,941 | 919,556 | 497,230 | 525,124 | 549,151 | 573,940 | 24,789 | 4.5 |
| 정기승마인구 | 승마클럽회원 | 자마회원 | 1,632 | 1,487 | 1,545 | 1,433 | 1,404 | 1,358 | 963 | 906 | 955 | 1,060 | 817 | ▼243 | ▼22.9 |
| | | 월회원 | 6,153 | 7,820 | 6,395 | 7,288 | 8,564 | 6,267 | 3,023 | 2,579 | 3,885 | 3,070 | 2,710 | ▼360 | ▼11.7 |
| | | 쿠폰회원 | 28,884 | 28,993 | 32,112 | 34,902 | 35,091 | 38,193 | 49,002 | 35,379 | 39,925 | 51,083 | 59,532 | 8,449 | 16.5 |
| | 회원 외 정기승마인구[46] | | 2,198 | 2,296 | 2,922 | 3,848 | 4,253 | 5,256 | 4,058 | 3,451 | 4,205 | 3,446 | 3,581 | 135 | 3.9 |
| | 소계 | | 38,867 | 40,596 | 42,974 | 47,471 | 49,312 | 51,074 | 57,046 | 42,315 | 48,970 | 58,659 | 66,640 | 7,981 | 13.6 |
| 체험승마인구 | | | 739,449 | 771,076 | 830,406 | 890,951 | 899,402 | 759,867 | 862,510 | 454,915 | 476,154 | 490,492 | 507,300 | 16,808 | 3.4 |

### 3) 지역별 조사

- **말보유 사업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지역이 1,099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234개소), 경북(207개소) 등의 순임

[표 3-1] 지역별 말 보유 사업체 수

(단위 : 개소)

| 구 분 | 2023년 총계 (A) | 말 | 당나귀·노새[52] | 2022년 (B) | 증감 (A-B) |
|---|---|---|---|---|---|
| 총계 | 2,339 | 2,296 | 43 | 2,341 | ▼2 |
| 서울 | 5 | 5 | - | 4 | 1 |
| 부산 | 16 | 16 | - | 17 | ▼1 |
| 대구 | 16 | 16 | - | 16 | - |
| 인천 | 17 | 14 | 3 | 16 | 1 |
| 광주 | 17 | 16 | 1 | 17 | - |
| 대전 | 12 | 11 | 1 | 12 | - |
| 울산 | 10 | 9 | 1 | 13 | ▼3 |
| 세종 | 12 | 10 | 2 | 13 | ▼1 |
| 경기 | 237 | 234 | 3 | 243 | ▼6 |
| 강원 | 72 | 65 | 7 | 72 | - |
| 충북 | 59 | 56 | 3 | 67 | ▼8 |
| 충남 | 109 | 104 | 5 | 101 | 8 |
| 전북 | 168 | 167 | 1 | 192 | ▼24 |
| 전남 | 140 | 135 | 5 | 132 | 8 |
| 경북 | 211 | 207 | 4 | 243 | ▼32 |
| 경남 | 135 | 132 | 3 | 129 | 6 |
| 제주 | 1,103 | 1,099 | 4 | 1,054 | 49 |

- 말사육 두수를 품종별로 살펴보면, 더러브렛 품종이 11,650두(42.7%)로 가장 많고, 이어서 교잡마(제주산마 포함)가 8,226두(30.1%), 제주마 5,070두(18.6%), 웜블러드계열 1,217두(4.5%) 등의 순임 *전북은 더러브렛이 761두로 전체 두수(1,407두)의 50% 이상을 차지

- 전체 두수를 지역별로 보면, **제주 지역이 전체의 54.2%**를 차지한 14,777두로 다른 지역 대비 말 두수가 월등히 많음. 단, **교육용**은 **경기 지역**의 말두수가 **가장 많음**

[표 3-2] 용도X지역별 사육 두수

(단위 : 두)

| 구분 | 2023년 총계 (A) | 승용 | 경주용 | 번식용 | 육용 | 관상용 | 교육용 | 기타 | 2022년 (B) | 증감 (A-B) |
|---|---|---|---|---|---|---|---|---|---|---|
| 총계 | 27,289 | 12,907 | 7,726 | 4,640 | 619 | 828 | 213 | 356 | 27,631 | ▼342 |
| 서울 | 32 | 30 | - | - | - | 2 | - | - | 27 | 5 |
| 부산 | 1,077 | 142 | 896 | 1 | - | 12 | 9 | 17 | 1,028 | 49 |
| 대구 | 167 | 150 | - | 3 | - | 14 | - | - | 152 | 15 |
| 인천 | 123 | 122 | - | - | - | 1 | - | - | 127 | ▼4 |
| 광주 | 151 | 148 | - | - | - | 3 | - | - | 181 | ▼30 |
| 대전 | 89 | 89 | - | - | - | - | - | - | 116 | ▼27 |
| 울산 | 99 | 94 | - | - | - | 5 | - | - | 93 | 6 |
| 세종 | 118 | 102 | - | - | - | 16 | - | - | 110 | 8 |
| 경기 | 4,873 | 2,912 | 1,472 | 211 | - | 146 | 83 | 49 | 4,937 | ▼64 |
| 강원 | 418 | 294 | - | 11 | - | 86 | 2 | 25 | 443 | ▼25 |
| 충북 | 303 | 263 | - | 2 | - | 34 | - | 4 | 307 | ▼4 |
| 충남 | 678 | 665 | - | 1 | - | 11 | - | 1 | 638 | 40 |
| 전북 | 1,407 | 858 | 350 | 123 | - | 57 | 15 | 4 | 1,538 | ▼131 |
| 전남 | 748 | 643 | 10 | 43 | - | 50 | - | 2 | 771 | ▼23 |
| 경북 | 1,345 | 1,184 | 17 | 64 | - | 49 | 27 | 4 | 1,363 | ▼18 |
| 경남 | 884 | 713 | 133 | 5 | - | 20 | 6 | 7 | 872 | 12 |
| 제주 | 14,777 | 4,498 | 4,848 | 4,176 | 619 | 322 | 71 | 243 | 14,928 | ▼151 |

- 부산 · 세종 · 경기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남 · 제주 지역은 **3~6세마 사육 두수**가 가장 많고,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충북 · 경북 지역은 7~10세마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음

- **전체 말산업 사업체 수는 2,682개소**로 이중 말 보유 사업체가 2,339개소이며 말 미보유 사업체는 343개소임. 말보유 사업체의 경우, **말 개인 사육자가 1,126개소**로 가장 많음. 이어서 말생산업(672개소), 승마시설(489개소)의 순임

- 지역별로 보면, 말 보유 사업체 중 **승마시설 운영 사업체**는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음. 말생산업, 말연관업 및 말 개인 사육자는 제주 지역이 가장 많음

[표 3-9] 말 보유 여부X지역별 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2023년 총계 (A=C+D) | 말 보유 사업체 | | | | | | 말 미보유 사업체 | | | 2022년 (B) | 증감 (A-B) |
|---|---|---|---|---|---|---|---|---|---|---|---|---|
| | | 소계 (C) | 말 생산업[54] | 승마 시설 운영[55] | 말 연관업[56] | 전문 기관[57] | 말 개인 사육자[58] | 소계 (D) | 말 생산업/ 말 연관업[59] | 전문 기관 | | |
| 총계 | 2,682 | 2,339 | 672 | 489 | 41 | 11 | 1,126 | 343 | 326 | 17 | 2,668 | 14 |
| 서울 | 63 | 5 | - | 3 | - | - | 2 | 58 | 53 | 5 | 62 | 1 |
| 부산 | 25 | 16 | - | 8 | - | - | 8 | 9 | 9 | - | 27 | ▼2 |
| 대구 | 25 | 16 | 1 | 5 | 1 | 1 | 8 | 9 | 9 | - | 27 | ▼2 |
| 인천 | 22 | 17 | - | 9 | - | - | 8 | 5 | 5 | - | 20 | 2 |
| 광주 | 20 | 17 | - | 6 | - | - | 11 | 3 | 3 | - | 20 | - |
| 대전 | 16 | 12 | - | 4 | - | - | 8 | 4 | 4 | - | 15 | 1 |
| 울산 | 12 | 10 | - | 6 | - | - | 4 | 2 | 2 | - | 15 | ▼3 |
| 세종 | 12 | 12 | 1 | 4 | - | - | 7 | 0 | 0 | - | 13 | ▼1 |
| 경기 | 345 | 237 | 27 | 106 | 5 | - | 99 | 108 | 102 | 6 | 341 | 4 |
| 강원 | 77 | 72 | 2 | 22 | 5 | 1 | 42 | 5 | 5 | - | 75 | 2 |
| 충북 | 66 | 59 | 2 | 19 | 1 | - | 37 | 7 | 7 | - | 73 | ▼7 |
| 충남 | 116 | 109 | 2 | 28 | 3 | - | 76 | 7 | 7 | - | 108 | 8 |
| 전북 | 180 | 168 | 27 | 33 | 2 | 3 | 103 | 12 | 11 | 1 | 204 | ▼24 |
| 전남 | 143 | 140 | 3 | 38 | 1 | - | 98 | 3 | 3 | - | 135 | 8 |
| 경북 | 225 | 211 | 8 | 74 | 3 | 2 | 124 | 14 | 13 | 1 | 255 | ▼30 |
| 경남 | 148 | 135 | 4 | 42 | 1 | - | 88 | 13 | 12 | 1 | 143 | 5 |
| 제주 | 1,187 | 1,103 | 595 | 82 | 19 | 4 | 403 | 84 | 81 | 3 | 1,135 | 52 |

- 말 보유 사업체의 조직형태별 현황은 개인사업체가 2,018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서 회사법인(213개소), 회사외법인(74개소) 등의 순임

- 모든 지역의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가 가장 많고, 회사 법인 말 보유 사업체의 경우 제주 지역에서 많음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정기승마인구가 20,299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7,817명, 제주 5,288명 등의 순임

- **전북 지역**의 경우, 경기·경북·제주와 더불어 말산업 특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충남(4,083명), 전남(5,066명) 지역보다 정기승마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지역별 정기승마인구

(단위 : 명)

| 구 분 | 2023년 총계 (A=C+D) | 승마클럽회원(C) | | | 회원 외 정기 승마인구 *(D) | 2022년 (B) | 증감 (A-B) |
|---|---|---|---|---|---|---|---|
| | | 자마 | 월 | 쿠폰 | | | |
| 총계 | 66,640 | 817 | 2,710 | 59,532 | 3,581 | 58,659 | 7,981 |
| 서울 | 21 | - | 15 | - | 6 | 29 | ▼8 |
| 부산 | 810 | 12 | 90 | 677 | 31 | 638 | 172 |
| 대구 | 1,323 | 12 | 167 | 1,105 | 39 | 982 | 341 |
| 인천 | 2,488 | 14 | 30 | 2,373 | 71 | 1,468 | 1,020 |
| 광주 | 1,357 | 31 | 10 | 1,302 | 14 | 771 | 586 |
| 대전 | 1,709 | 2 | 82 | 1,596 | 29 | 552 | 1,157 |
| 울산 | 765 | 16 | 40 | 705 | 4 | 746 | 19 |
| 세종 | 999 | 4 | 26 | 953 | 16 | 768 | 231 |
| 경기 | 20,299 | 356 | 384 | 18,915 | 644 | 16,131 | 4,168 |
| 강원 | 3,683 | 21 | 78 | 3,313 | 271 | 2,803 | 880 |
| 충북 | 2,961 | 6 | 55 | 2,750 | 150 | 1,856 | 1,105 |
| 충남 | 4,083 | 37 | 268 | 3,577 | 201 | 4,878 | ▼795 |
| 전북 | 4,021 | 54 | 267 | 3,374 | 326 | 3,735 | 286 |
| 전남 | 5,066 | 47 | 43 | 4,656 | 320 | 4,395 | 671 |
| 경북 | 7,817 | 78 | 373 | 6,806 | 560 | 10,986 | ▼3,169 |
| 경남 | 3,950 | 72 | 210 | 3,481 | 187 | 4,146 | ▼196 |
| 제주 | 5,288 | 55 | 572 | 3,949 | 712 | 3,775 | 1,513 |

<출처: 「2023 말산업실태조사 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 '24.02.)」

# 2.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 개선(국토교통부)

◇ 현장 건의에 따라 농공단지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하도록 개선
◇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 1 추진 배경

□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되어 있었음

□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음

□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 지자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 2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힘

* 지방규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자문기구로, 행안부 훈령(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중('23.5월~)

** 건폐율: 건설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음

## 3 기대 효과

□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

□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천672개 업체(업체수는 '24.3분기 가동업체 기준)가 혜택을 받게 되었음

□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과]

○ 전북자치도의 농공단지는 '24년 12월 말 현재 60개가 조성되어 있으나, 이중 **12개 농공단지가 미분양 상태**이며,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률 7.6%**로 나타나고 있음

**< 전북자치도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미분양 현황 >**

2024년 12월말 현재 (단위:㎡,%)

| 단지명 | 시군구 | 지정면적 | 분양대상 면적 | 개발면적에 대한 분양현황 | | | |
|---|---|---|---|---|---|---|---|
| | | | | 분양공고 면적 | 분양 | 미분양 | 미분양율 |
| 총 60개 | | 11,240,829 | 8,652,759 | 8,652,759 | 7,995,388 | 657,371 | 7.6 |
| 고수농공단지 | 고창군 | 106,369 | 83,328 | 83,328 | 80,617 | 2,711 | 3.3 |
| 순창풍산농공단지 | 순창군 | 138,330 | 111,920 | 111,920 | 100,480 | 11,440 | 10.2 |
| 복분자농공단지 | 고창군 | 196,358 | 128,118 | 128,118 | 107,531 | 20,587 | 16.1 |
| 장수농공단지 | 장수군 | 139,546 | 102,589 | 102,589 | 88,650 | 13,939 | 13.6 |
| 임피농공단지 | 군산시 | 239,156 | 176,243 | 176,243 | 152,916 | 23,327 | 13.2 |
| 순창풍산제2농공단지 | 순창군 | 169,768 | 124,178 | 124,178 | 109,416 | 14,762 | 11.9 |
| 소성특화농공단지 | 정읍시 | 230,852 | 163,718 | 163,718 | 100,242 | 63,476 | 38.8 |
| **부안제3농공단지** | **부안군** | **327,039** | **228,791** | **228,791** | **51,108** | **177,683** | **77.7** |
| **함열농공단지** | **익산시** | **328,482** | **208,263** | **208,263** | **63,007** | **145,256** | **69.7** |
| 정읍철도산업농공단지 | 정읍시 | 220,886 | 142,388 | 142,388 | 103,790 | 38,598 | 27.1 |
| 완주농공단지 | 완주군 | 298,313 | 233,367 | 233,367 | 172,216 | 61,151 | 26.2 |
| **오수제2농공단지** | **임실군** | **171,764** | **109,286** | **109,286** | **24,845** | **84,441** | **77.3** |

* 자료 : 국토교통부

○ 전국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미분양률은 '24년 12월 기준 2.8%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북자치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7.6%**로 나타나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심각한 상황임

# <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미분양 현황 >

2024년 12월말 현재 (단위:㎡,%)

| 구분 | 단지수 | 지정면적 | 분양대상면적 | 개발면적에 대한 분양현황 | | | |
|---|---|---|---|---|---|---|---|
| | | | | 분양공고면적 | 분양 | 미분양 | 미분양율 |
| 전국 | 484 | 78,316,387 | 59,189,921 | 57,264,727 | 55,654,991 | 1,609,736 | 2.8 |
| 부산 | 1 | 258,083 | 189,317 | 189,317 | 189,317 | 0 | 0.0 |
| 대구 | 4 | 768,977 | 606,461 | 606,461 | 606,461 | 0 | 0.0 |
| 광주 | 1 | 324,451 | 257,100 | 257,100 | 257,100 | 0 | 0.0 |
| 울산 | 4 | 590,343 | 455,890 | 455,890 | 455,890 | 0 | 0.0 |
| 세종 | 4 | 565,845 | 441,957 | 441,957 | 441,957 | 0 | 0.0 |
| 경기 | 1 | 116,704 | 96,219 | 96,219 | 96,219 | 0 | 0.0 |
| 강원 | 49 | 7,591,657 | 5,430,012 | 5,025,809 | 4,979,538 | 46,271 | 0.9 |
| 충북 | 44 | 6,282,887 | 5,095,716 | 5,042,821 | 5,034,920 | 7,901 | 0.2 |
| 충남 | 94 | 14,967,988 | 11,284,045 | 10,732,384 | 10,635,235 | 97,149 | 0.9 |
| **전북** | **60** | **11,240,829** | **8,652,759** | **8,652,759** | **7,995,388** | **657,371** | **7.6** |
| 전남 | 70 | 11,838,953 | 8,677,071 | 7,894,756 | 7,594,314 | 300,442 | 3.8 |
| 경북 | 68 | 11,592,113 | 8,783,176 | 8,649,056 | 8,195,385 | 453,671 | 5.2 |
| 경남 | 81 | 11,864,693 | 8,979,599 | 8,979,599 | 8,932,668 | 46,931 | 0.5 |
| 제주 | 3 | 312,864 | 240,599 | 240,599 | 240,599 | 0 | 0.0 |

* 자료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폐율 80%의 완화요건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바, **전북자치도는 미분양된 농공단지의 분양**을 통하여 건폐율 완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3. 2025년 생활·학교체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 대상 사업 선정 지원**

## 1 추진배경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 '24년까지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체육회에 교부하였던 국가보조금**을 '25년부터 공모 등을 통해 **각 지자체에 교부**하여 지역맞춤형 생활·학교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개편함

## 2 주요내용

**< 표 1 > '25년 생활·학교체육 개편방향**

| 변경 사항 | 기존 | 개편(안) |
|---|---|---|
| 보조사업자 | **대한체육회** → 시도체육회 | **광역지자체** → 시도체육회<br>※ 종목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강사 채용 및 운영 등은 기존처럼 시도(시군구) 체육회 주관으로 진행 |
| 사업 내용 | **학교안 + 밖 프로그램** 운영<br>①학교안 : 시도교육청 협조를 통해 학교 선정(학교에서 학생 모집 후 시군구체육회에 참가자 명단 제출)<br>②학교밖 :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단위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학교밖 프로그램** 중심 운영<br>⇒ 학교 안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종목에 대한 체험과 관심 확대<br>※ 시도체육회-교육청·학교 간 협업을 통한 학교시설 활용도 가능 |
| | (학교 밖) **해당 시설에서 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지도강사** 적극 활용 | **종목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은퇴선수 등 다양한 자원** 활용 확대 |

※ 국비:지방비 = 7:3 비율로 매칭 지원

○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 선정**

-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인구구조, 시설 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차등 배분(59억 원)**'과 '**공모 선정(81억 원)**'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

- '차등 배분'은 시도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예: 유아·어르신·취약계층 대상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거나 신규 설계한 사업에 대해 시도당 3억 5천만 원 내외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며,

- '공모 선정'은 새로운 생활체육 기획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15개 시도가 제출한 기획서 총 68건(국비 요구액 122억 원)을 심사해, 15개 시도 59개 기획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13개 시도, 298개 학교체육관 개방 지원**

-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동네 학교 체육시설을 방과 후와 주말, 방학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3개 시도에 총 42억 4천6백만 원을 지원

- 국비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을 담당하는 관리자* 인건비를 비롯해 임차료, 공공요금, 손해배상 보험료 등에 사용될 예정

* 지방체육회나 스포츠클럽에서 파견해 시설 운영·안전 관리와 이용자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체육회, 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이 298개소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소통 기회가 커지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7개 시도 선정**

-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이 주말까지 빈틈없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차등 배분**(87억 원)'과 '**공모 선정**(54억 원)'으로 구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
- 이번 공모에서는 7개 시도의 주말 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선정해 시도당 평균 2억 2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에는 빙상, 골프, 배구, 사이클, 스키 등 올림픽 종목이지만 그간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작았던 종목들도 포함돼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체육정책과]**

○ 전북의 경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771,384천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577,123천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679,889천원**의 국가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 이를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전국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사업으로 추가 공모에 대응 계획.

○ 작년까지 대한체육회를 통해 도체육회에 교부됐던 보조금을 올해부턴 **보조사업 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한 만큼 지역맞춤형 생활·학교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 개방 학교 체육시설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체육회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

# 참고 1 '25년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공모 결과

(단위: 천원)

| 선정 연번 | 시도 | 기획사업명 | 주관단체 | 공모 선정액 (국비 기준) | 인구감소지역 |
|---|---|---|---|---|---|
| | **합계** | | | **7,873,813** | |
| | 서울 | | | 479,100 | |
| 1 | | 찾아가는'청소년 바른 체형 운동교실' 운영 | 광진구 | 17,500 | |
| 2 | | 어르신 취미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당구·탁구) 활동 지원 | 광진구 | 36,600 | |
| 3 | | 훈련원공원 전통 활쏘기 활성화 사업 | 중 구 | 25,000 | |
| 4 | | 중랑천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조성 운영 |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 | 400,000 | |
| | 부산 | | | 315,000 | |
| 5 | | 달려라 부산 | 부산시체육회 | 70,000 | |
| 6 | | 달밤에 체조, 부산 | 부산시체육회 | 245,000 | |
| 7 | 대구 | 플래그풋볼 국제교류 및 저변 확대 사업 | (사)대한미식축구협회 | 415,000 | 군위군 |
| 8 | 광주 | 광주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온가족 사계절 스포츠 교실 | 광주광역시체육회 | 35,490 | |
| | 대전 | | | 350,000 | |
| 9 | | 꿈꾸는 스포츠교실 | 대전광역시체육회 | 175,000 | |
| 10 | |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대전광역시체육회 | 105,000 | |
| 11 | |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 대전광역시체육회 | 70,000 | |
| | 울산 | | | 500,000 | |
| 12 | | 2025 울산 전국궁도 및 세계궁도대회 | 대한궁도협회 등 | 500,000 | |
| | 경기 | | | 755,825 | |
| 13 | | 김포시 빙상체육활동 지원 | 김포시체육회 | 70,000 | |
| 14 | | 유소년 기초종목 생활체육대회 | 경기도체육회 | 175,000 | |
| 15 | | 신바람 나는 시니어 건강체육대학 페스티벌 | 안산시체육회 | 15,071 | |
| 16 | | 화성특례시 치어리딩 생활체육 교실 | 화성시체육회 | 21,700 | |
| 17 | | 올림픽을 향해 쏴라, 양궁메달리스트 양성 프로그램 | (사)오산스포츠클럽 | 21,154 | |
| 18 | | 용인특례시 생활체육 스마트 조정체험교실 | 용인시체육회 | 434,000 | |
| 19 | | 이천시 어르신 파크골프 교실 | 이천시체육회 | 18,900 | |
| | 강원 | | | 1,949,055 | |
| 20 | | 해양 스포츠 팜(F.A.M.E: Future Athletes Marine Incubation) 사업 | 강릉시체육회 | 437,909 | |
| 21 | | 대한민국 눈동이 패스포트 프로그램 | ㈜스포츠맵 외 1 | 501,200 | 평창군 |
| 22 | | 동계스포츠 생활체육 대중화 프로젝트 | 윈터700스포츠클럽 | 214,900 | 평창군 |
| 23 | | 동계 스포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 컬링 육성 사업 | 강릉시체육회 | 155,474 | |
| 24 | | 지역 특화 생활체육 활성화(서핑) | 양양군체육회 | 112,000 | 양양군 |
| 25 | | 삼척 3대3농구 스포츠케이션 사업 | (사)코리아쓰리엑스쓰리 | 480,000 | 삼척시 |
| 26 | | 2025년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 | 사단법인인제군체육회 | 33,600 | |
| 27 | | 2025년 춘천시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 춘천시체육회 | 13,972 | |

#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 선정 연번 | 시도 | 기획사업명 | 주관단체 | 공모 선정액 (국비 기준) | 인구감소지역 |
|---|---|---|---|---|---|
| | 충북 | | | 212,800 | |
| 28 | | 5세~80세까지 누구나 마음껏 즐기는 피클볼 | 괴산군피클볼협회 | 65,800 | 괴산군 |
| 29 | | 지역 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 제천시체육회 | 70,000 | 제천시 |
| 30 | | 2025년 생활체육교실 활동지원 | 보은군체육회 | 77,000 | 보은군 |
| 31 | 충남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 충청남도체육회 | 300,000 | |
| | **전북** | | | **771,384** | |
| **32** | | **무주 태린이문화 페스타** | **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 | 175,000 | **무주군** |
| **33** | | **시민과 함께하는 풋살활성화 프로그램** | **드림허브군산FS** | 140,000 | |
| **34** | | **유적지 탐방 걷기운동프로그램** | **익산시체육회** | 87,240 | |
| **35** | | **미래체육을 경험하라!<br>디지털스포츠활성화프로그램** | **함성스포츠클럽** | 203,000 | |
| **36** | | **진안군 구기종목 활성화 지원사업** | **진안군체육회** | 134,000 | **진안군** |
| **37** | | **2025년 장수군 지역자율형 생활체육지원사업** | **장수군체육회** | 22,694 | **장수군** |
| **38** | | **김제스포츠클럽 지역자율형 생활체육지원사업** | **김제스포츠클럽** | 9,450 | **김제시** |
| | 전남 | | | 1,062,845 | |
| 39 | | 유·청소년 배드민턴 인재 육성 | 강진군<br>배드민턴협회 | 140,000 | 강진군 |
| 40 | |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전라남도 생활체육 교실 | 나주시체육회,<br>광양시체육회,<br>담양군체육회,<br>강진군체육회 | 153,265 | 담양군,<br>강진군 |
| 41 | | 우리동네 체육꿈나무 스포츠클럽 | 나주스포츠클럽 | 102,200 | |
| 42 | | 화순군 생활체육 교실 | 화순군 체육회 | 146,580 | 화순군 |
| 43 | | 1004섬 신안 스포츠강좌 운영 | 1004스포츠클럽 | 140,000 | 신안군 |
| 44 | | 소외계층『온드림(one dream)축구교실』운영 | 장흥군 체육회 | 78,400 | 장흥군 |
| 45 | | 유소년전문축구. 5축구.여자축구교실 | 강진청자FC | 140,000 | 강진군 |
| 46 | | 축구로 하나되는 '꿈과 땀의 열정' | 강진군 축구협회 | 92,400 | 강진군 |
| 47 | |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강좌 | 장성군 | 70,000 | 장성군 |
| | 경북 | | | 83,482 | |
| 48 | | 줌바&라인댄스 | 명실상주스포츠클럽 | 21,000 | 상주시 |
| 49 | | 러닝크루(육상) | 명실상주스포츠클럽 | 28,000 | 상주시 |
| 50 | | 칠곡군청 레슬링팀 레슬밴드 체험교실 | 칠곡군체육회 | 28,000 | |
| 51 | | 어르신 파크골프교실 | 의성군체육회 | 6,482 | 의성군 |
| | 경남 | | | 250,950 | |
| 52 | | 온가족이 함께하는 씨름 체험의 날 행사 | 산청군체육회 | 5,950 | 산청군 |
| 53 | | 천년의 숲 '상림 둘레길'건강 걷기 | 함양군체육회 | 91,000 | 함양군 |
| 54 | | 빈집활용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 나누미 사업 | 거창군체육회 | 70,000 | 거창군 |
| 55 | | 시니어 운동처방전문인력 배치사업 | 합천군체육회 | 84,000 | 합천군 |
| | 제주 | | | 392,882 | |
| 56 | | 제주스포츠클럽 건강·돌봄 프로그램 | 제주스포츠클럽 | 106,400 | |
| 57 | | 서귀포시스포츠클럽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 204,400 | |
| 58 | | 제주 오름 트래킹 프로그램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54,740 | |
| 59 | | 지역 연계 육성 테니스 컨디셔닝 프로그램 | 제주테니스스포츠클럽 | 27,342 | |

## 참고 2 '25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공모 결과

(단위: 천원)

| 연번 | 광역 지자체 | 2025년 공모 신청 예산액 | | | 공모 선정액 (국비 기준) |
|---|---|---|---|---|---|
| | | 국비 | 지방비 | 계 | |
| 1 | 서울 | 19,000 | 19,000 | 38,000 | 0 |
| 2 | 대구 | 24,500 | 10,500 | 35,000 | 22,050 |
| 3 | 인천 | 22,190 | 9,510 | 31,700 | 19,971 |
| 4 | 광주 | 29,617 | 12,693 | 42,310 | 24,036 |
| 5 | 대전 | 672,000 | 288,000 | 960,000 | 604,800 |
| 6 | 충북 | 114,450 | 49,050 | 163,500 | 101,505 |
| 7 | 충남 | 337,190 | 144,510 | 481,700 | 298,671 |
| 8 | 경기 | 1,310,000 | 563,692 | 1,873,692 | 1,161,683 |
| **9** | **전북** | **644,799** | **276,343** | **921,142** | **577,123** |
| 10 | 전남 | 726,824 | 311,496 | 1,038,320 | 654,142 |
| 11 | 경북 | 487,944 | 209,119 | 697,063 | 426,220 |
| 12 | 경남 | 188,356 | 80,724 | 269,080 | 163,471 |
| 13 | 제주 | 84,224 | 36,096 | 120,320 | 72,502 |
| 14 | 강원 | 133,140 | 57,060 | 190,200 | 119,826 |
| **합계** | | **4,794,234** | **2,067,793** | **6,862,027** | **4,246,000** |

## 참고 3 '25년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1차 공모 결과

(단위: 천원)

| 연번 | 광역 지자체 | 2025년 공모 신청 예산액 | | | 공모 선정액 (국비 기준) |
|---|---|---|---|---|---|
| | | 국비 | 지방비 | 계 | |
| 1 | 서울 | 238,073 | 102,029 | 340,102 | 238,073 |
| 2 | 인천 | 9,898 | 4,242 | 14,140 | 9,898 |
| 3 | 경기도 | 516,119 | 221,194 | 737,313 | 165,326 |
| 4 | 충남 | 27,125 | 11,625 | 38,750 | 27,125 |
| **5** | **전북** | **767,760** | **329,040** | **1,096,800** | **679,889** |
| 6 | 전남 | 163,359 | 70,011 | 233,370 | 109,473 |
| 7 | 경북 | 312,200 | 133,800 | 446,000 | 310,870 |
| 8 | 경남 | 42,700 | 18,300 | 61,000 | 0 |
| **합계** | | **2,077,234** | **890,241** | **2,967,475** | **1,540,654** |

# 4. 2025학년도 학교복합시설 1차 사업 공모 (교육부)

## ≪ 주요내용 ≫

◇ **인구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 심화 및 지역소멸 우려, 늘봄학교 지원 강화,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가 필요**

## 1 추진배경

○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23.3.17.) 따라 **5년간**('23~'27)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 공모·선정** 추진

○ 학교복합시설 건립으로 **교육·돌봄** 인프라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 2 공모개요

○ **(대상)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하는 지자체·교육청·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착공 전 사업 일체**

○ **(선정)**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개별 사업 40교 내외(지원액 3,600억 원 이내)

-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과 연계사업 우선 선정**
-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229개)에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목표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지자체 우선 선정**
- 학교복합시설 추진 시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의 경우 우선 선정

○ **(사업비 지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재정자립도(20%미만~40%이상)에 따라 총사업비의 20%~ 30%를 지원하며,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 50%까지 예산 지원
- 사업비는 사업특성 및 지역여건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 교육부 지원비는 **주요시설 용도별 기준 단가에 면적을 곱하여 합산한 총사업비**에 지원비율 고려하여 지원

[ 전년 대비 '25년 공모사업 변경 내용 ]

| 구분 | `24년 공모사업 | `25년 공모사업(안) |
|---|---|---|
| 공모대상 | • 시도교육청 소유 시설·부지 등에 지자체·교육청·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착공 전 사업 일체 | •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하는 지자체·교육청·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착공 전 사업 일체 |
| 예산 지원 | • (조성비) 인구소멸지역, 수영장 포함 사업은 일괄 50% 지원<br>※ 공사단가(4,041천원/㎡) 이내에서 총사업비에 지원비율을 고려해 지원<br>(단, 철거, 도서지역 등 특수 요인은 인정함) | • (조성비) 인구감소지역, 수영장 포함 사업은 일괄 50% 지원<br>※ '25년 공모사업 시설용도별 지원비 산정 기준 단가(안) 기준으로 사업비 지원 |

## 3 신청 및 선정 방법

○ **(공고)** 2025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공고('25.1월, '25.5월)

※ **(주요일정)** ('25.1월)1차 사업 공고 → ('25.2월)1차 접수 → ('25.3월)1차 선정 → ('25.5월)2차 사업 공고 → ('25.6월)2차 접수 → ('25.7월)2차 선정

○ **(신청)** 지자체, 시·도교육청 간 추진 의지 확인 후 신청

- **지자체**는 학교,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 신청서 작성 후 **시·도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
-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에서 신청된 사업들을 취합·검토하여 **전문기관(KEDI) 사전검토 의뢰 후** 교육부로 공모사업 신청

○ **(심사)**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종합심의** 후 대상 사업 확정

※ 평가항목(배점) : 지역 여건 및 수요(40), 사전 준비(25), 사업계획의 타당성(35)

○ **(선정)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확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4 예산교부

○ 지방비 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 상황 검토를 통해 지원 예산 교부

○ 지원 예산은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책정한 **'25년 공모사업 시설용도별**

지원비 산정 기준 단가 기준으로 사업비 총액(부지비 제외)에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교부 예정

## 5 정 산

○ **사업종료 후 90일 이내**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 공모 선정 후 2차년 12월말('25년 공모사업 기준 '27년 12월 31일) 사업 추진(설계발주)이 되지 못한 경우 지원 예산 반납

○ **재심사 대상**

- **선정 후 총사업비**(또는 연면적)가 **30%이상, 부지 위치, 주용도 변경 사업**

○ 예산의 사용 및 정산은 관계 법령 및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지원비 집행 및 정산지침에 따라 처리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교육협력과)**

○ **'23~'24년 전국 대비 전북 지역 선정 결과**

(단위: 억원)

| 구 분 | 전국 | | | 전북 | | | |
|---|---|---|---|---|---|---|---|
| | 신청기간 | 선정결과 | 사업비 (교육부) | 지역 | 사업명 (학교급) | 사업비 | 용도 |
| '23.1차 | 7.13~8.14 | 39 | 7,500 (3,020) | 부안 | 변산돌봄문화센터 (초) | 110 | 도서관, 돌봄교실, 평생교육시설 기타 |
| '24.1차 | 2.19~3.12 | 22 | 3,750 (1,520) | 순창 | 학교복합시설 (학교 밖) | 194 | 체육관, 기타 |
| '24.2차 | 6.12~7.12 | 20 | 4,620 (2,075) | 정읍 | 학교복합문화센터 (고) | 172 | 실내체육관, 주자창, 영재교육실, 합주실 및 공연장, 실습실 |
| | | | | 남원 | 동부권학교복합시설 (학교 밖) | 196 | 실내체육관, 미래교육실, 북카페, 디지털 스포츠 교실 등 |
| 계 | | 80* | 15,870 (6,615) | 계 | | 672 | |

* 2023년 기선정된 사업 재공모 선정으로 중복 제외

○ 교육부는 '27년까지 주요 정책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및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낮은 출생율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모든 지자체에 1개 이상 조성할 계획

○ ’23 시작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에서 **전북**은 **23년 부안, 24년 순창·정읍·남원 총 4개 지역**이 선정(총 사업비 672억) **학교 내·밖에 학교복합시설을 건립이 추진** 중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지자체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익산은 관심지역으로 현재까지 **학교복합시설을 공모하지 않은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 수 감소 및 지역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에 대비하여 **학교복합시설에 적극 공모**가 필요

○ 최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 중인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사용료를 과다 및 과소 산정하여 부적절하게 징수한 사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복합시설을 운영하여 **시설 안전관리를 소홀**,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계약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 업체가 선정**되는 문제, 복합시설 이용자의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시설관리 전담 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보도

○ 또한 시설비 조성 예산은 교육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지만, 이후 **운영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해 늘어나는 지자체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등의 해법**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복합시설 **사전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학생 및 지역 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병행하여 복합시설을 불편없이 이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합시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행·재정적 절차 미숙 및 전담 인력 부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1. 시니어 일자리 지자체 운영 사례 (인천광역시 외)

◇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은퇴 어르신들에게 공공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제공 및 지역과 상생하는 노인 일자리사업 지자체 운영 사례를 통한 정책 운영 제안**

### 1 추진배경

○ **2025년** 고령인구가 총 인구의 29%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2045년 고령인구 비율이 37%로 OECD주요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초고령화사회 :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

○ **은퇴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이라는 통계*를 보듯이, 은퇴 후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를 위해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이 요구됨

* 2022년 66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7%임 (통계청)

### 2 주요내용

○ **지자체 시니어 인력 활용 사례**

- 각 자치단체에서 은퇴한 시니어 인력을 **공공부문**에서 활용·민간기업에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

**① 여권민원 시니어 도우미 (인천광역시)**

- **(사업기간)** 2025. 2.~11.(10개월) * 2024년 시범사업 추진
- **(사업내용)** 여권민원서류(6종) 작성 등 신청에서 종료까지 전 과정 도움
- **(인력확보)**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근로자 배정 요청(인건비 포함)
- **(운영체계)** 평일 9~18시 / 3시간씩 3인 교대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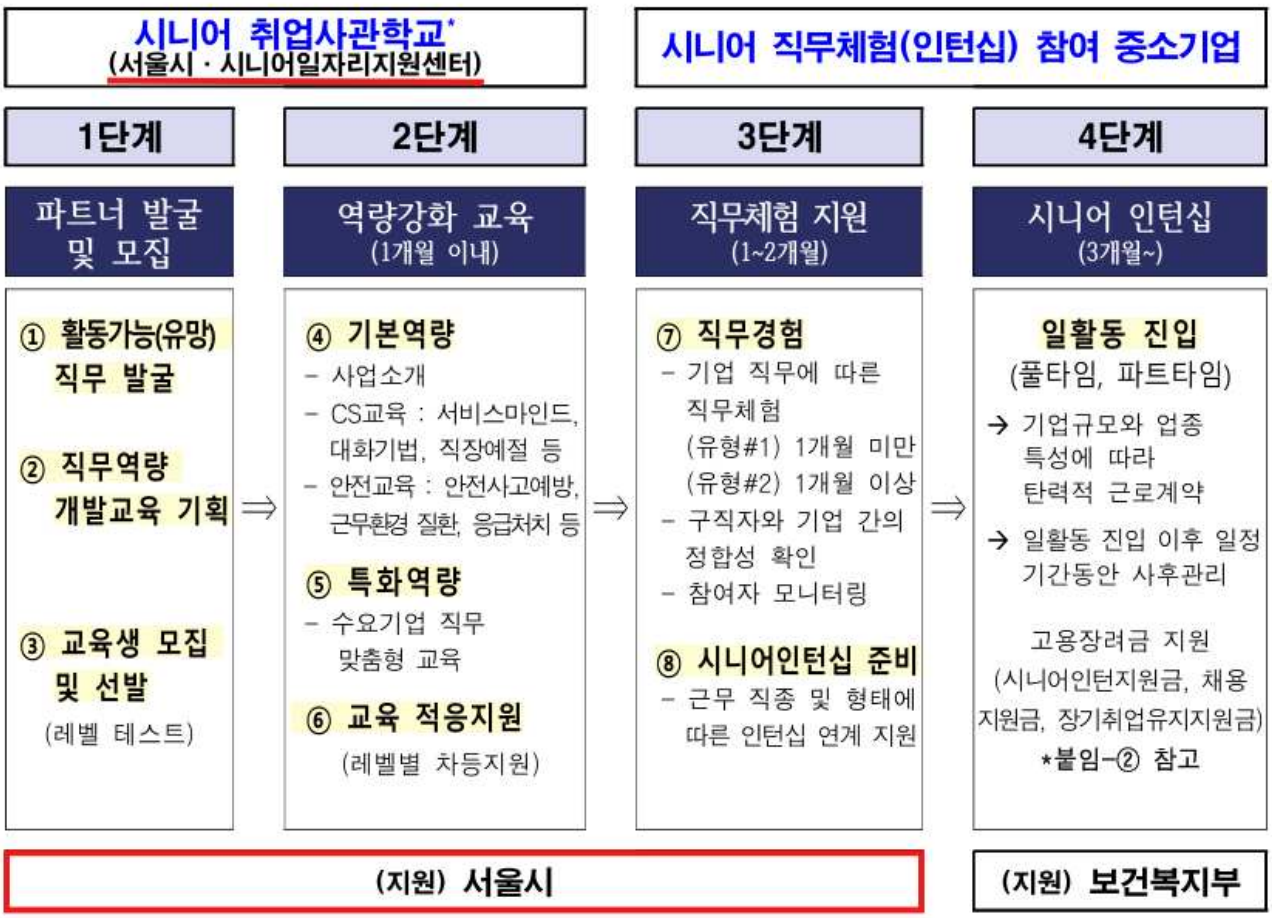
※ (주요실적) 10개월('24. 2.~11.)간의 토요일 신청건(3,831명)을 제외한 총 26,800명 (2024년 총 접수량의 70%)의 여권서류 작성 안내 등 도움을 줌

**②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잡(Job) 챌린지' (서울특별시)**

- **(사업기간)** 2025. 연중 모집 (인턴십 최대 3개월)
- **(사업내용)** 60세 이상 시니어 채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시니어 일자리 제공 및 직무체험(인턴십)에 필요한 직무교육 등 *연간 300여명 규모 운영예정
- **(운영체계)** 서울복지재단 내 시니어일자리센터('25.01.개관) 운영하여,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기획 및 개발, 취업 상담,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기존 노인복지센터(노인종합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던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시니어일자리센터' 개관 및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 참여 지원

□ 사업 운영 체계




※ 직무에 따라 2~3단계 중 일부 생략 가능(전부 생략은 불가)

- (서울시) 기업별 직무특성을 고려한 **'무료 맞춤교육'** 제공 (1~3단계)
  * 참여기업 요청 시 월 25시간~57시간 이내 활동시간 조정 가능
  * 기업부담금無- 일경험 동안 참여자 활동비 지급(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月28~65만원('24년기준)
- (보건복지부) 채용후 초기 6개월간 **'1인당 최대 240만원 기업지원금'** 지급 (4단계)

**③ 시니어 폴리스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기간)** 2025. 2.~11.(10개월)
- **(사업내용)** 60세 이상 퇴직경찰관 10명으로 구성하여, 자전거 절도 범죄 예방, 개인형 이동장치, 이륜차 위반행위 촬영, 교통안전 지원 업무 지원 등
- **(운영체계)** 시니어폴리스 근무관리(세종경찰청), 세종시 재향경우회(경우회원 추천) 사업주관 및 근무지원(세종종합사회복지관) 등

※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업무의 주최인 '자치경찰위원회'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은퇴 시니어의 일자리 창출 및 범죄·교통 등 안전사고 예방 기여

## ○ 지역과 상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사례

-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109만 8천개**(총 2조1,847억원)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작년 대비 6만 8천개 일자리가 증가한 수치임

* **노인일자리 유형**: ①노인공익활동사업(봉사활동, 취약계층 지원 등), ②사회서비스형(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 등), ③시장형일자리사업(소규모 매장운영, 택배서비스 등), ④역량활용형(경력과 활동역량 활용, 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 ⑤취업알선형(민간기업 일자리 알선 등)

** **급여 및 활동시간:** ①공익활동형(월 30시간, 1일 3시간 내, 월 29만원), ②사회서비스형(월 60시간, 월 76만1천원), 시장형/취업알선형(근로계약에 따름)

-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으로,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① 강원형 공공 이불빨래방('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운영**

- **(사업기간)** 2025. 1.~10.(10개월) * 2020년 시범사업 추진(삼척시 4호점 개소)
- **(사업내용)** 노인·장애인 등 이불 세탁 및 교체,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및 연계
- **(인력확보)** 강원도·삼척시, 삼척시니어클럽, 강원랜드 희망재단 등 연계
- **(운영체계)** 노노케어(老老CARE) 사회서비스형(월 60시간 근무), 빨래방 관리직원 운영 등

※ (주요실적) **'23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발굴 '최고 운영기관' 선정**, 민관합작의 성공적인 복지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전국으로 사업모델이 확산 중임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표>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역혁신 사례

| 연번 | 지역 | 사업명 | 참여노인 역할 및 성과 | 협력체계 |
|---|---|---|---|---|
| 1 | 인천 남동구 | 시니어 폐의약품 수거활성화 | – **(역할)**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수거, 분리 및 취합 관리, 처리 방법 홍보 캠페인<br>– **(성과)** 지역사회 폐의약품 수거율 증가, 주민인식 제고 및 참여 독려, 환경오염 방지 | – 지자체(청소행정과), 보건소 |
| 2 | 경기 군포시 |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단 | – **(역할)** 자동심장충격기 기기 점검, 기기 위치 및 사용 홍보, 기기 사용방법 교육활동<br>– **(성과)** 기기 점검 관리, 홍보 교육을 통한 시민 안전 제고에 기여 | – 지자체, 보건소 |
| 3 | 강원 삼척시 |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 – **(역할)** 지역 내 노인·장애인 이불 세탁 및 교체,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및 연계<br>– **(성과)** 돌봄 취약계층 발굴 및 서비스 제공에 기여, 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 – 지자체, 공기업 (강원랜드) 및 민간기관 |
| 4 | 강원 원주시 | 늘봄학교 지원 | – **(역할)** 늘봄학교 활동 지원(숙제점검, 놀이활동), 안전지도, 교구관리, 행정업무 지원<br>– **(성과)** 늘봄학교 정책추진 및 아동수요 확대에 따른 지원, 교사 업무부담 경감 | – 지자체, 강원도 교육청 |
| 5 | 충북 음성군 | 시니어 푸드뱅크 매니저 | – **(역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업무 지원, 위기가구 발굴 관리, 기부처 발굴 등<br>– **(성과)** 위기의심가구 관리 및 기부처 확대 | – 지자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6 | 대전 대덕구 | 무연고 장례동행 서비스 | – **(역할)** 무연고 장례지원(발인, 화장, 봉안시설 방문), 웰라이프 프로그램, 공영장례제도 홍보<br>– **(성과)** 공영장례 지원, 웰라이프 프로그램 운영 | – 지자체,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공영장례식장 |
| 7 | 전북 정읍시 | 한울타리 사업단 | – **(역할)**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치매예방 서포터즈, 문화공연 등 지원<br>– **(성과)** 노인교육을 통해 터득한 경륜활용 활동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역할 | – 지자체, 도서관, 경로당, 요양기관 등 |
| 8 | 전북 군산시 | 생태도센트 | – **(역할)** 밀월식물 재배 및 식재, 환경정화, 탐방객 대상 생태도센트 활동 및 생태교육<br>– **(성과)**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한 신사업모델 개발,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지자체(농총지원과, 관광진흥과), 농업기술센터 |
| 9 | 대구 남구 | 시니어 전통시장 매니저 | – **(역할)**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 경기동향조사, 온누리상품권 등 정부정책 현황 조사<br>– **(성과)** 화재 안전검검 및 시설물 개선, 경기동향조사 및 정책홍보 지원 | – 지자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구소방안전본부 |
| 10 | 경북 포항시 | 시니어 교통안전 데이터 조사단 | – **(역할)** 지역내 교통량 및 보행량 조사, 교통안전시설물 조사 등 데이터 수집·관리<br>– **(성과)** 교통사고 위험성 저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교통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 – 지자체, 한국도로교통공단 |

<출처: 지역과 상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사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41216)

| 연번 | 지역 | 사업명 | 참여노인 역할 및 성과 | 협력체계 |
|---|---|---|---|---|
| 11 | 부산 동구 | 늘봄 장애아동 매니저 | – **(역할)** 특수교육대상 아동 돌봄(식사, 이동보조), 학습 보조(교육활동), 안전보호<br>– **(성과)** 늘봄장애아동매니저 양성, 장애아동 돌봄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경감 | – 지자체, 부산교육지원청 |
| 12 | 울산 동구 | 스마트 시설안전 관리 매니저 | – **(역할)** 소규모 취약시설(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 점검, 긴급점검사항 전달<br>– **(성과)** 소규모 취약시설 자율안전점검, 안전위험사항 안내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
| 13 | 제주 서귀포시 | 시니어 드론 순찰대 | – **(역할)** 드론 활용 지역순찰로 산불 및 해안연안 안전사고 감시, 비상상황 시 수색 등<br>– **(성과)** 연안 안전사고, 오폐수 방류 확인 및 신속 대응 기여 | – 지자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 14 | 제주 제주시 | 모다들엉 여행사 | – **(역할)** 제주도 관광 가이드, 여행상품 및 코스 개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확충<br>– **(성과)** 지역 특성 및 경쟁력 확보, 취약계층 및 종사자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 | – 지자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

출처 : 김가원 외(202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지역혁신 사례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고령친화정책과]

○ 전북자치도의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24.1%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으며, 지난 2022년부터 도내 고령자 비율이 22.6%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음

<그림>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024년, 2052년 비교 (단위 :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전북자치도 '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관련 목표인원은 **87,357명, 지원예산은 총 390,384백만원**으로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은 약 50%임. '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까지 노인일자리 확충에 따른 정부 계획으로 향후 **지방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25년 전북 노인일자리 사업관련 운영 계획**
- **(사업목표)** 87,357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6,714명, 전담인력 643명)
- **(수행기관)** 98개(시니어클럽 17, 노인복지관 18, 종합사회복지관 등 63)
-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등
- **(사 업 비)** 390,384백만원 (국비 49%, 도비 20%, 시군비 31%)

○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과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임. 어르신들의 일과 사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공공의 사회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고, 노인을 지역의 유용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상, 시장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워 **공공영역에서 추가적인 행·재정적 비용**을 들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함.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전북도에서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공공분야 다양한 일자리 운영이 필요**함

○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시, '공익활동형'같은 단순 환경정화, 교통안전보조 등 활동에 사업이 치우치지 않게('24년 공익활동형 사업이 노인일자리의 63.5% 차지함), 어르신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할 수 있게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사업 확대**가 요구됨

<참고자료>


1. 공공부문 시니어 인력 활용 동향 (나라살림연구소, '25.02.13.)
2. 지역과 상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사례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4.12.16.)
3. '25년 서울형 시니어 잡 챌린지 사업안내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25.01)
4. 인천시 여권민원 시니어 도우미 사업 본격 시행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25.02.04.)

# 2.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경기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 신용카드 출시**

## 1 추진배경

○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음

○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 및 증가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 자영업자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8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말(15조 9,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 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 경기침체로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문을 닫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음

○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는 '24년 9월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

## 2 주요내용

○ (지원혜택) ① **연회비 ZERO!** ② **무이자 6개월 할부!** ③ **보증료 ZERO!** ④ **3% 캐시백**(연간 10만 원 한도, 최대 5년간 지원)

○ (카드한도) 500만 원

○ (사용기간) 보증기간과 동일

※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증만기일까지 기한연장 처리 완료 필수

○ (카드사용처) 건축자재(조명기구, 페인트, 인테리어), 보건위생(미용재료, 의료용품), 사무통신(컴퓨터, 사무용기기, 통신기기), 서적 문구(일반서적, 문구용품), 연료판매(주유소, LPG, 전기차 충전소), 유통(농협하나로클럽, 슈퍼마켓, 인터넷Mall), 음료식품(제과점, 정육점, 농·축·수산물), 주방용구(주방용구, 주방용식기, 정수기), 직물(옷감, 카펫, 커튼), 공과금 납부(조세서비스, 통신요금, 가스비)

※ 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 인건비 지급 등 이용 불가

○ **2025년도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 1차로 총 1,000억 원 규모를 우선 공급으로 도내 소상공인 약 2만 명 혜택

○ 협약을 맺은 **IBK기업은행은 1차 공급 시 250억 원을 부담**하고, 도는 자금 소진 추이에 따라 연내 2차 공급도 추진할 계획

## 3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보증 내용

○ (지원대상)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신용점수 595점 이상)

※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연체, 세금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 기본요건에 저촉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기간) 1년(최대 5년 이내 4회 연장 가능)

※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증만기일까지 기한연장 처리 완료 필수(보증만기일 전까지 기한연장 미완료 시,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카드사용 불가)

○ (취급은행) 기업은행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1%(기업은행에서 전액 부담 고객부담분 없음)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일자리민생지원과/전북신용보증재단)

○ 국세청 국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3만1029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명

| 년도 | 2024 | 2023 | 2022 | 2021 |
|---|---|---|---|---|
| 폐업자수 (법인+개인) | 31,029 | 27,323 | 28,371 | 29,240 |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 폐업하는 사업자가 늘면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도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423억8천622만원으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음

○ 이에 전북자치도는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2024년 1조 원이었던 특례보증 규모를 2025년 1조 2천억 원으로 늘릴 계획임

○ 특히 '보듬자금 특례보증'은 전년 대비 1,450억 원 증가한 2,800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하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도 운영

○ 또한 '소상공인 대응 저출산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결혼 10년 이내이거나 임신 및 난임 치료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있음

○ 전북신용재단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특례보증으로 현재 단기 유동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와 같은 필수 운영비 경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통역앱 지원 (경상남도)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TBM(Tool Box Meeting) 시 통역앱 활용을 통한 언어 장벽 해소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통역앱 이용료 지원**

## 1 추진배경

○ ’23년 사고사망자(812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637명으로 78.4%,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10.5% 차지

○ 외국인의 국내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언어 문제로(43.4%, ‘22년 통계청 조사) 사회적 갈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언어장벽 문제 우선 해결 필요

○ 경남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에 따라 내·외국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업무 지연 최소화 및 근로환경 개선 도모

○ 첨단 통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조선업 작업장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도내 조선업, 건설업 등 중소기업 5~10개사 정도

※ 개사당 최대 4백만원(도비 80%, 기업 자부담 20%)

○ (지원내용) 민간에서 개발·활용 중인 건설·조선 현장 용어 번역 앱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하도록 비용 지원

- 모바일 앱의 AI서비스를 활용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대화를 실시간 통역 서비스 제공

※ 대상언어(55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태국어 등

○ 지원내용 : 도내 소재 기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통역앱 서비스 사용료 지원

| 분 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통역앱 사용료 지원 | – AI기반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이 희망하는 외국어 통번역 및 1:N(다국어) 동시통역 앱 서비스 지원<br>– 조선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용어 번역 서비스 등 맞춤형 언어 솔루션 제공을 위한 플랫폼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료 지원<br>*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통역앱 서비스 공급기업을 직접 선정하여 사업 신청 가능** | 기업당 최대 4백만원 |

## 3 지원 대상

○ 조선업 등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

※ 사업 수행 사업장이 타 시 · 도에 소재하는 경우 경남지역 소재 기업으로 불인정하며, 과제 선정 후 사업장 타 지역 이전 시 협약 취소 및 지원비 환수

◦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아 의사소통 및 안전 관리가 중요한 기업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업
◦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부적격 사항 해당 경우 지원 제외

◦ 동일내용으로 타기관 지원받은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휴 · 폐업중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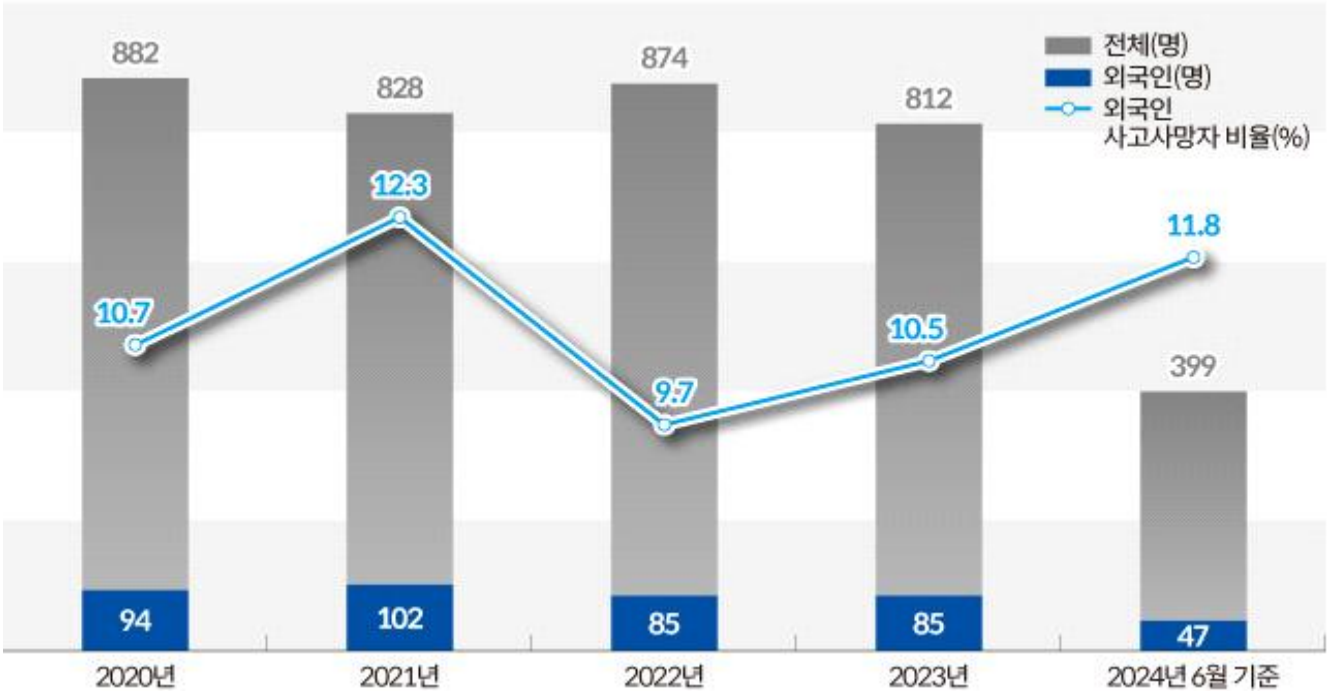
## Ⅱ. 지자체 추진 사업 사례와 전북자치도 비교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관계부서 : 기업애로해소과]

○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내·외국인 산업재해 현황은 '24년 상반기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 사망한 노동자 399명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는 47명으로 1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내·외국인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현황 >**

단위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

○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기반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부여하는 비전문 취업 비자(E-9), 방문취업(H-2) 비자 확대에 따라 조선업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목숨을 잃은 외국인들이 점차 늘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늘면서 외국인 산업재해 신청건수도 크게 늘고 있으며, 2020년 8062건 수준이던 외국인 산재 신청건수는 2023년 9543건으로 3년만에 18%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산재 승인건수도 7778건에서 9097건으로 약 17% 증가했음

## < 연도별 외국인 산업재해 승인률 >

| 구분 \ 연도 | | 단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월 |
|---|---|---|---|---|---|---|---|
| 외국인 | 건수 | 건 | 8,062 | 8,555 | 8,886 | 9,543 | 6,715 |
| | 승인건 | 건 | 7,778 | 8,199 | 8,509 | 9,097 | 6,324 |
| | 승인율 | % | 96.5 | 95.8 | 95.8 | 95.3 | **94.2** |

* 자료 : 근로복지공단

○ 전북자치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23년 65,119명에서 '24년 73,802명으로 13% 증가하였으며, 외국인노동자는 26%, 기타 외국인은 29% 증가하였음

(단위:명)

| 연도 | 합계 | 외국인 근로자 | 결혼 이민자 | 유학생 | 외국국적동포 | 기타 외국인 | 국적 취득자 | 외국인 주민자녀 |
|---|---|---|---|---|---|---|---|---|
| '23.11.1 | 73,802 | 13,505 | 5,872 | 9,799 | 2,781 | 20,842 | 7,118 | 13,885 |
| '22.11.1 | 65,119 | 10,705 | 5,722 | 9,502 | 2,680 | 16,119 | 6,777 | 13,614 |
| 증감 | 8,683 <13%> | 2,800 <26%> | 150 <3%> | 297 <3%> | 1,071 <4%> | 4,723 <29%> | 341 <5%> | 271 <2%> |

※(기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거주·영주권자, 불법체류자 등)

○ 전북자치도에서도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하여 일일통역상담원을 지원하여 고용허가제 협약 체결 언어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산 현대조선소에서도 통역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시간 통역에 대한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음

○ 최근 스마트 앱을 통한 번역기(파파고, 구글번역 등)나 AI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일반통역은 가능하나, **건설업이나 조선업 등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는 직역에서는 전문번역기의 도움**을 통하여 **산재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4. 2025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확대 (전라남도)

◇ **여행 기회가 적은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여행활동 지원으로 도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해 행복여행활동 지원 확대 운영**

## 1 추진배경

○ 전남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 불편을 이유로 여행이 어려웠던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범위를 넓히고 다양화하기 위해 **'25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을 확대** (3월 시행 예정) 운영함

## 2 주요내용

○ **지원금액**

- 도, 시·군비 3:7 비율로 매칭 (**'25년도 도비 3억 원 편성**)

| 종 전 | | 변 경 |
|---|---|---|
| • 관광취약계층 여행상품 지원<br>- (당일) 인당 16만원<br>- (1박2일) 인당 35만원 | ➡ | • 여행상품 지원 확대<br>- (당일) **인당 18만원(2만원↑)**<br>- (1박2일) **인당 38만원(3만원↑)** |

※ 1박2일 상품은 도서지역 대상 (완도, 진도, 신안)

○ **지원내용**

- 장애인과 저소득층 대상 도내 위주 당일 여행상품 지원
- 거동이 불평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
- 대상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
- 도서지역 3개 군 (완도, 진도, 신안)은 1박2일 숙박 여행상품 운영

※ 여행장소 및 프로그램은 시군별 여행사 및 여행상품 공모를 통해 선정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전남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관광산업과]

○ 전북의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운영(계속)' 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역량있는 여행사를 전북특별자치도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북 관광상품 개발·홍보 및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현재 도내 전담여행사 선정시 관광약자의 여행 접근성 개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관광약자 지원시책을 반영**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 이는 관광약자를 위한 리프트카 보유업체 최소 1개소 이상 선정 및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의 일환**일뿐 관광기회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는 부족함이 있을것이라 판단됨

○ 또한, 전남과 비교시 도내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 및 여행 상품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전담여행사 선정 이후에라도 협의를 통해 여행상품을 개발·발굴하여,

○ 관광취약계층에게도 여행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관광 산업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 < '25년 전담여행사 선정 공모 계획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담여행사 지정·운영
- 지정기간 : 2025.1월 ~ 2026.12월 (2년)
- 사 업 비 : 110백만원 / 1년 (기타보상금 100, 사무관리비 10)
- 사업대상 : 15개 여행사 내외 (국내8, 국외7)
- 주요사항

① 전담여행사 지정기간 : 2025년 ~ 2026년 (2년간)
- 연초 공모 추진으로 인한 사업 지체 등 여행업체 부담을 줄이고, 전담여행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담여행사 지정기간 2년 지정

② 숙박비 지원금액 (1인) 변경 : 2박 35 → 40천원, 3박 50 → 60천원으로 상향

③ **관광약자를 위한 리프트카 보유업체 최소 1개소 이상 포함 선정**
- **관광약자의 여행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모선정 시 가산점 부여**

④ 전북도내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 공모선정 시 도내업체 가산점 부여

## 참고 전담여행사 지원내용

| 구 분 | | 내 국 인 | 외 국 인 | 비 고 |
|---|---|---|---|---|
| 모객기준 | | - 20명 이상 | - 10명 이상 | |
| 지원 금액 | 차량 임차비 | - 1일 1인당 10,000원 | | |
| | 숙박비 | - 1박 20,000원, 2박 40,000원, 3박 60,000원 / 인 | | |
| | 문화 체험비 | - 한복체험 (도내 한복 대여 시 건별 1만원)<br>- 유료체험비 (체험비 건당 5천원 / 인)<br>* 인당 최대 20천원 지원<br>* 1회당 1만원 이상 유료 체험에 한함 | | |
| | 기타 | - 팸투어 운영 실비 지원 (연1회)<br>(버스임차비, 숙박비. 식비, 문화체험비, 입장료 등)<br>* 1개사당 1박 이상, 최대 2,000천원 지원<br>- 전북관광상품개발 홍보 실비 지원 (연1회)<br>*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비 (온라인 수수료 포함)<br>* 1개사당 1회, 최대 1,500천원 지원 | | |
| 지원기준 | | - 당일 : 도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식사 1식 이상<br>- 1박 이상 : 매일 도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식사 1식 이상 (호텔식 제외) | | |

**※ 전담여행사로 지원받았을 경우 동일건으로 전북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 운영 계획 (지원기준 및 금액 등) 변경 될 수 있음**
**※ 허위 증빙자료 제출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1.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방안(지방행정연구원(2024))

### ‹‹ 연구요약 ››

◇ 협업형, 기능이양형, 전면이관형 3가지 유형의 방식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이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 중복 해소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 가능
◇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 비용 절감과 함께 지방 재원의 자율적 운용 가능

### □ 연구배경

○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자치권 부여**. 이에 따라 **특별행정기관 기능 이관 필요성** 대두

○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 효율성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단계적 이관** 방안 모색

○ 범위를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노동 등 지방이양 대상 5대 분야 및 산림분야로 한정

### □ 주요내용

#### 1) 전북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 기관현황

| 기관명 | 주요 기능 | 소재지(분야) |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국도건설관리, 국가하천 정비 | 익산시(국토관리) |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 | 전주시(중소기업)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항만기반시설 확충 | 군산시(해양수산) |
| 전북지방환경청 | 새만금유역을 비롯한 전북지역 환경업무 총괄 | 전주시(환경) |
| 전주고용노동지청 | 고용창출, 고용지원 | 전주시(노동) |
| 익산고용노동지청 | | 익산시(노동) |
| 군산고용노동지청 | | 군산시(노동) |
| 서부지역 산림청 |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 지원 | 남원시(산림) |

##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각 기관은 전북 지역의 다양한 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한 상황
- 각 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분석하여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와 중앙정부가 계속 수행해야 할 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 기관별 기능 분석

- 각 기관은 도로 건설 및 관리, 중소기업 지원, 환경 보호, 고용 창출 등의 역할 수행하나 **지방정부와 중복되는 행정 업무가 존재**
- 일부 기관은 법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단순 이관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점진적 이관 추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주요 업무>

| 기관 | 주요 업무 |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건설·관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주요임무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를 관할 |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전북특별자치도 및 장항항(충청남도)을 관할<br>해상운송사업, 선박 등록 및 검사, 항만 운영 및 연안역 관리, 항만건설공사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및 보호, 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
| 전북지방환경청 | 전북지역(6시 8군 전지역)의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으로 새만금 유역을 비롯한 전북지역의 주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자연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 지정폐기물 및 화학물질관리, 화학테러 대응,환경사범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 |
| 전주, 익산, 군산 고용노동지청 | 관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직업훈련,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 산업재해의 예방 등의 사무를수행 |

### 2)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모형

○ 정비 필요성 및 정비 방식 비교

- 특별지방행정기관 대부분의 국가사무들은 **전북자치도와 중복되거나 현지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 사무로 이양 검토**
  - **협업 방식** :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업무를 조정.

· **부분 이관 방식** : 특정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 **완전 이관 방식** : 해당 기관을 폐지하고 모든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

· **하이브리드 방식** : 일부 기능은 중앙정부에 남겨두고,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식.

- 각 방식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맞춤형 이관 방안**

· **단계적 이관** : 초기에는 협업 및 부분 이관을 시행하고, 이후 완전 이관을 목표로 추진

·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조례 정비 필요

· **재정 및 인력 확보** : 지방정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마련

· **기능별 사전 평가 실시** :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이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의 비교 분석>

| 구분 | 주요 내용 | 장 점 | 단 점 |
|---|---|---|---|
| 전부<br>이관 방식 | • 조직, 예산, 인력 전부를 소관 부처에서 시·도로 변경하여 이관 | • 명확한 관리 감독 체계<br>• 소관의 명확성을 바탕으로 관리 및 감독 주체에서 명확<br>• 간명한 조직 정비 | • 부처의 반발<br>• 지방직 전환으로 인한 노조 등 반발<br>• 제주 사례의 경우, 예산 축소 및 전문성 저하 우려 |
| 사무<br>위임 방식 | • 특행기관 조직은 그대로 두되, 수행 사무 중 지자체에서 수행이 적절한 경우 사무 위임 | • 통상적인 국가 사무의 지자체 위임을 방식을 활용하기 용이함 | • 위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특행조직 설치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무의 위임 추진은 모순됨 |
| 지휘감독권<br>이관 방식 | • 조직 및 공무원 신분은 국가직 유지하되, 지휘 및 감독은 시·도지사로 이관<br>• 인사운영도 국가직으로 운영<br>※ 소방직, 자치경찰 등 방식 | • 지휘 체계만 변경 가능하므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br>• 인사교류가 원활하여 전문성 제고 가능 | •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의 경우에 비춰볼 때, 지휘 감독 체계 혼선 및 인사관리 비효율성 발생 |

| | | | | |
|---|---|---|---|---|
| 시·도의회 통제 방식 | | • 해당 지역내 특행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시·도의회보고 | • 지방의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 활용 가능 | • 시·도의회 보고를 위한 조례 제정권 등 별도 법적 근거 마련 필요<br>• 국정감사 외에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이중 감사 문제 |
| 거버넌스 협업 체계 | 강한 협업 |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연합 활용 | • 광역적 수요에 상응하는 특행기관의 정비에 용이 | • 실질적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협약 등 별도 구속력 장치 필요 |
| | 약한 협업 | • 소관부처-지자체 간 협의회 구성 | • 협의체를 통한 상호 소통 및 업무협의 추진에 용이 | • 정책결정을 위한 실질적 구속력 없음 |

### 3) 특별지방행정기관 협업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중복 업무를 막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업이 요구

- 역대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양이 인력·재원을 수반하지 않은 반쪽짜리로 추진되온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방행정의 종합성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견 제기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유사업무 수행 현황>

| 분야 | 유사업무 내용 |
|---|---|
| 국토 | 개발제한구역 관리, 공유수면 관리, 하천 조사·관리 |
| 환경 | 환경보전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공해업소 관리 등 |
| 노동 | 노동조합 관리, 근로감독, 노사분쟁조정, 노동쟁의 알선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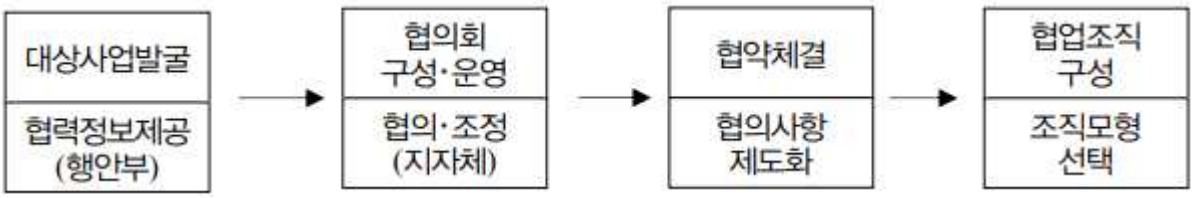
<지방이양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조정 적합 분야>

| 분야 | 유사업무 내용 |
|---|---|
| 국토교통 | 하천공사관리, 건설품질관리, 발주공사 관리 기능 |
| 환경 | 지정폐기물 관리, 환경산업체관리 기능 |
| 노동 | 고용평등,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노사지원, 근로감독 기능 |

○ 협업체계 구축 방안

- **지역 협의기구 신설** : 전북특별자치도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협의회를 운영.
  ·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보다 **실질적인 협업의 제도화**를 위해 협의회에 **국토교통,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노동 등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명문화**
- **법적 기반 마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
  · (가칭)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에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협의 조직의 기본 흐름은 대상 **업무발굴→지자체간 협의회 구성→협약체결→협업조직 구성→사업추진** 등의 절차로 구성될 수 있음

<협업조직 구성의 추진절차>




- **정기적 평가 시스템 도입** : 협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주요 내용>

| 분류 | 내 용 |
|---|---|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설치 (제2조 제1항) |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둠 |
| 정책협의회의 기능 (제2조 제2항) |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br>1.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br>2.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br>3.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br>4.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br>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 |
|---|---|
| 정책협의회의 구성<br>(제3조) |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차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구성함<br>•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도록 함 |
| 정책협의회의 운영<br>(제5조) |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br>(제8조) |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의장이 되고,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둠 |
| 이행상황의 점검<br>(제10조 내지 제12조) |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의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br>• 간사는 협의사항 및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법상 사무위탁의 내용(지방자치법 제168조)>

| 구분 | 내 용 |
|---|---|
| 사무위탁의 절차 |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
| 사무위탁 규약의 내용 |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br>•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br>•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br>•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br>•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br>•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
| 사무위탁의 변경 또는 해지 |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함 |

### 4)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한 사무이관 방안

○ 단위별 사무 이양은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함. **단편적 기능 이양은 조직 간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함.

- 단위 사무별 이양은 이양사무 집행에 따른 인력과 재정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나 **기획, 집행, 재정이 분리되어 있어 소요 인력 및 재원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 전북자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자기결정과 자기책임 원칙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 개정** :「전북특별법」을 개정하여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이양 추진

  * 법률이나 정책을 규정할 때 특정한 제한이나 금지사항만 명시하고 그 외 사항에는 자율성을 두는 체계

- **이양 기준 정립** : 각 사무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수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일괄적인 이양 기준 마련
- **재정 지원 방안 마련** : 이관된 사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체계 확립.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 및 지방세 기반 강화 방안 추진
- **이관 평가 및 보완** : 이관 이후 운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추진. 사무이관 후 지방정부의 수행 역량 평가 및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조정 필요
- **전담 조직 신설** : 사무 이관을 총괄할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 중앙과 지방 간 원활한 업무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단계적 역량 강화** : 사무 이관 이전에 지방정부의 전문 인력 양성과 조직 정비를 지원하여 점진적인 이양이 가능하도록 조치
- **IT 및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전산망 및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 결론 / 시사점

○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은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 접근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정**

○ **법·제도적 개편, 단계적 이관, 재정 지원 및 인력 확보, IT 기반 마련 등의 조치를 병행 실행**하여 지역 자치 역량 강화와 행정 효율성 증대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

# 2. 특별자치시도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개정안 마련(지방행정연구원(2024))

## ≪ 연구요약 ≫

◇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 기존 제주특별법, 세종시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을 통합한 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추진
◇ 특별자치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세의 일정 부분을 특별자치시·도에 이양, 재정지원 제도 개선
◇ 특별자치시·도의 법률을 보완하여 독자적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 연구배경

○ 특별자치시·도의 출범 목적이었던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특례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 강원 및 전북자치도의 경우 **행정적·재정적 특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자치권 행사가 어려움**

○ 특별자치시·도의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개정안 마련**

## □ 주요내용

### 1) 특별자치시·도의 자치재정권

#### ① 제주특별법의 재정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지방세 관련 특례

| 구분 | 내 용 | 근거 조항 |
|---|---|---|
| **제주특별자치도세** |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통합하여 부과·징수 가능 | 제120조 |
| **지방세 특례** | 도 조례로 지방세 부과 기준 및 감면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제121조 |
| **세액 감면 특례** | 제주자치도 내 특정 기업 및 주민 대상 세제 감면 조치 가능 | 제122조 |
| **세율 조정 특례** | 탄력세율 적용 가능 | 제123조 |

· 제주자치도세는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통합하여 징수하며, **지방세 부과 기준 및 세율 조정 권한이 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세원 운영의 자율성이 높음**

**- 지방교부세 및 국가재정지원 특례**

·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자동 교부받는 특례 보장

·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설치 이전보다 축소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제주특별계정 설치 가능

| 구분 | 내 용 | 근거 조항 |
|---|---|---|
| **보통교부세 특례** | 국가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제주자치도에 교부 | 제124조 |
| **국가의 재정지원 보장** |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설치 이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 | 제125조 |
|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자치도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 운영 가능 | 제125조 |

**-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채 발행 특례**

·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 지방공기업의 관리 및 공유재산·물품 관리에 대한 특례로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

| 구분 | 내 용 | 근거 조항 |
|---|---|---|
| **지방채 발행 특례** | 도의회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 및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가능 | 제126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특례** | 도 조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제130조 |
| **예산 편성의 주민참여 특례** |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 | 제127조 |

**② 세종·강원·전북자치도의 재정특례**

○ 각각 「세종시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재정 특례를 적용.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할 때 **세종·강원·전북의 재정 특례는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

**-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특례(세종시법 제14조)**

· **국가 행정 기능 수행을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특별자치시**로서, 재정 운용에서도 일부 특례 적용

| 구분 | 내 용 | 근거 조항 |
|---|---|---|
| 세종특별자치시세 | 광역시세와 구세를 통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세로 운영 | 제14조 1항 |
|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에 25%를 추가 반영하여 보정 | 제14조 2항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 | 세종시세 총액의 1천분의 36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 제14조 5항 |
| 담배소비세 특례 |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14조 4항 |

· 제주자치도처럼 국세 이양이나 지방채 발행 특례가 없으며, 재정적 자율성이 제한적

**-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강원특별법 제8조, 제19조)**

·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기존보다 일부 확대된 재정특례 반영

| 구분 | 내 용 | 근거 조항 |
|---|---|---|
| 행·재정적 특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 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 | 제8조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계정 설치 | 제19조 |
| 재정건전화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용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 제20조 |

· 제주자치도처럼 **보통교부세 특례나 지방채 발행 특례가 없어 실질적 재정적 자율성 제한적**

**-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전북특별법 제9조, 제116조)**

· 2023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2024년 12월부터 시행

| 구분 | 내 용 | 근거 조항 |
|---|---|---|
| 행·재정적 특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명문화 | 제9조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 설치 가능 | 제116조 |

·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보통교부세 특례나 지방세 발행 특례가 없어 재정적 자율성 제한적**

○ 특별자치시·도 재정특례 비교

| 구분 |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
| 보통교부세 특례 | ○<br>(총액의 3% 교부) | ○<br>(기준재정수요액에 25% 추가 반영) | × | × |
| 지방세 특례 | ○<br>(조례로 세율 감면 조정 가능) | × | × | × |
| 지방채 발행 특례 | ○<br>(도의회 의결시 외채 및 지방채 초과발행 가능) | × | × | × |
| 국가 재정 지원 보장 | ○<br>(설치 이전보다 재정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장) | × |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 ○ |
| 담배소비세 전출 특례 | × | ○<br>(소비세 45%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 않을 수 있음) | × | × |

- **강원·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세 이양, 지방세 특례 등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음**

○ 개선 방향

- 강원·전북에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일정 비율을 추가 반영하는 특례 부여**
- 강원·전북·세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율 조정 특례 도입 및 지방채 한도 초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 **국가 재정 지원 보장 조항이 없는 특별자치시·도에 법 조항 신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재정 지원 비율을 명확히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지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없어 **매년 지원 예산이 다르고 지속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음**
-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특별자치시·도는 개별 법률 기반으로 운영되어 체계적인 재정 권한을 강화하기 어려움

➡ **'특별자치시·도 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든 특별자치시·도의 공통 재정특례 기준을 설정.**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개별 법률 개정 추진(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 개정). **공동협력체를 구성, 국회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상 추진**

## 2) 특별자치시·도의 자치조직권

○ 제주특별법의 조직특례

| 구분 | 내 용 | 근거 조항 |
|---|---|---|
|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특례** |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도 조례로 변경 가능 (단, 주민투표 필요) | 제8조 |
|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특례** | 도 조례로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제44조 |
| **공무원 정원 및 직급 기준 특례** | 인건비 총액 규제를 배제하고, 도 조례로 정원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제49조 |

- 합의제 행정기관(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설치 요건은 중앙정부 기준을 따라야 함.

○ 세종·강원·전북의 자치조직권 실태

| 구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
| **행정기구 설치 자율성** | ○<br>(조례로 행정기구 설치) | × | × |
| **공무원 정원 조정 권한** | × | × | × |
|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 × | × | × |

- 강원·전북특별자치도는 **자치조직권 관련 특례가 거의 없어 일반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적 제한을 받음**

○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과제

-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 강원·전북·세종에 대한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
- **특별자치시·도 공무원 직급 지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제주와 같이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자치시·도의 행정기구 설치·폐지 권한을 도 조례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
- 특별자치시·도 **조직권 강화를 튀한 특별법 개정**

· ‘특별자치시·도 조직권 강화법(가칭)’제정을 추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직 특례 마련

**➡ 세종·강원·전북에 대한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 공무원 조정권 부여.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 위임 및 조직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

### 3) 특별자치시·도의 자치입법권

○ 제주특별법의 자치입법 특례

| 구분 | 내 용 | 근거 조항 |
|---|---|---|
| **자치입법권의 범위** |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 외에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영역 확대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조항 |
| **법률안 제출 요구권** | 도지사가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제19조 |
| **조례 제정 특례** | 특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제240조 |

-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조례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 마련

○ 세종·강원·전북의 자치입법권 실태

| 구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
| **조례 제정 자율성** | ○ (제한적) | ○ (제한적) | ○ (제한적) |
| **법률안 제출 요구권** | × | × | × |
| **조례 제정 특례** | 일부 존재 | 일부 존재 | 일부 존재 |

- 강원·전북특별자치도는 조례 재정 특례를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입법권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

○ 조례 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과제

- 특별자치시·도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 강원·전북·세종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특별자치시·도가 법률 위임 없이도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강화 조항' 신설**

· 자치입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앙정부의 법률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

- 법률안 제출권 실효성 확보

· 강원·전북·세종에도 **법률안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 추진**

· 국회에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특별자치시·도 입법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 법률 개정 요구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도 공동 입법 추진기구' 구성**

- 조례에 의한 과세권 확대

· **조례로 개별소비세(카지노, 경마장, 골프장 등)에 대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특별자치시·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세·관광세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조례 권한 확대**

· 특별자치시·도에 한해 **조례로 과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자치과세조례제정권' 도입**

- 특별자치시·도 조례 제정의 우선권 확보

· 특별자치시·도의 **조례가 일반 법령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지역 내에서 중앙정부의 **법령보다 특별자치시·도의 조례가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조례 우선 적용권' 부여**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지원 기구 신설**

➡ **세종·강원·전북에 대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 권한 부여. 특별자치시·도에 법률안 제출 요구권 부여 및 조례로 과세권 확대 및 세율·세목 조정 가능하도록 법 개정**

## □ 결론 / 시사점

○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특별자치시·도를 포괄하는 **'특별자치시·도 기본법' 제정 추진**

○ 특별자치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세 이양 및 지방세 특례 확대**가 반드시 필요

○ 독자적인 입법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률안 제출 요구권을 모든 특별자치시·도로 확대**

# 3.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11.)]

## ≪ 연구요약 ≫

◇ 노인의 여가와 정보화 현황에 대해 '연령'을 중심으로 노인 집단 내에서의 이질적 현황을 파악하고,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향후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함

◇ 2023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파악을 통해, 노년기 여가와 정보화 수준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큰 영역이지만 노인 집단의 이질성과 보편적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 연구배경 및 목적

○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여가*'부분에서 노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노년기 1일 평균 여가시간**은 **6시간 51분**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여가시간(4시간 47분)보다 많음(통계청, 2020)

* '여가' 시간이란 1일 평균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자원봉사, 문화 및 여가활동 등) 으로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2022)

○ 많은 노인이 **하루 1회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하는 등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 활동은 노인에게도 일상화**되고 있음. 정보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는 노인의 삶과 이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음

○ 노인의 여가와 정보화 현황에 대해 '연령'을 중심으로 노인 집단 내에서의 이질적 현황을 파악하고,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향후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1.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현황

○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종류**

- 우리나라 노인의 95.3%는 전통적인 TV와 라디오를 활용하여 1일 평균 3.9시간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년층**에서도 **스마트 기기 보유율이 증가**(스마트폰 보유율 2020년 56.4%, **2023년 76.6%**) (이윤경 외, 2020; 강은나 외, 2023)하면서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유튜브 시청과 라디오 청취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43.7%**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하였음. 우리나라 노인 중 81.3%는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제외한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음

**[표 1] 노인의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현황**

(단위: %, 시간)

| | | TV와 라디오 활용 | | 스마트 기기 활용 | |
|---|---|---|---|---|---|
| | | 시청 및 청취율[1] | 시간[2] | 시청 및 청취율[1] | 시간[3] |
| 전체 | | 95.3 | 3.9 | 43.7 | 1.3 |
| 연령 | 65~69세 | 96.0 | 3.4 | 65.5 | 1.3 |
| | 70~74세 | 95.4 | 3.8 | 48.8 | 1.3 |
| | 75~79세 | 93.7 | 4.2 | 33.7 | 1.4 |
| | 80~84세 | 95.4 | 4.3 | 20.2 | 1.4 |
| | 85세 이상 | 95.0 | 4.5 | 8.6 | 1.4 |

주: 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기존의 TV와 라디오를 활용한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9600명을 대상으로 함.
3)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47명을 대상으로 함.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 여가문화활동 참여자들이 **주로 하는 여가문화활동**은 **휴식활동**이 **9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회 및 기타활동 43.2%, 취미오락활동 39.1%로 여가문화활동의 대부분은 위의 세 가지 활동에 집중되어 있음

**[표 2] 노인의 주된 여가활동 종류**

(단위: %)

| | | 참여율[1] | 주된 여가활동[2][3] | | | | | | | |
|---|---|---|---|---|---|---|---|---|---|---|
| | | | 문화예술 관람활동 | 문화예술 참여활동 | 스포츠 관람 활동 | 스포츠 참여 활동 | 관광 활동 | 취미오락 활동 | 휴식 활동 | 사회 및 기타 활동 |
| 전체 | | 81.3 | 1.9 | 3.1 | 2.7 | 9.1 | 4.3 | 39.1 | 96.5 | 43.2 |
| 연령 | 65~69세 | 86.3 | 3.1 | 2.9 | 3.9 | 12.6 | 6.3 | 44.3 | 87.6 | 39.2 |
| | 70~74세 | 82.6 | 1.9 | 2.5 | 2.5 | 8.7 | 4.1 | 38.7 | 97.2 | 44.4 |
| | 75~79세 | 81.1 | 1.3 | 3.6 | 2.0 | 8.8 | 3.7 | 35.6 | 101.5 | 43.5 |
| | 80~84세 | 75.5 | 0.6 | 4.3 | 1.4 | 5.9 | 2.1 | 38.0 | 103.5 | 44.1 |
| | 85세 이상 | 69.9 | 0.4 | 2.3 | 1.6 | 1.5 | 1.7 | 28.0 | 110.9 | 53.6 |

주: 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전체 응답자 1만 78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8190명을 대상으로 함.
3) 1순위, 2순위 중복응답에 대한 분석으로 각각의 합이 100.0%를 넘을 수 있음.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 **노인의 여가문화시설 이용 현황 및 향후 이용 의향**

-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으로 **전체 노인의 26.5%**가 **이용**함. 여가문화시설 이용 현황은 연령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경로당의 경우 60~69세는 10.1%만이 이용하였으나 **85세 이상**은 **51.8%**로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등 연령이 많은 집단의 이용률이 높았음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교실과 같이 공공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75~79세의 비율이 가장 높고**, 70세 미만의 이용률은 매우 낮아 신규 노인 집단의 여가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공공복지기관의 개편이 필요해 보임

- 노인 집단 내에서도 **연령군별 선호하는 노인 여가문화시설이 상이**하며, 연령 분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노인 여가복지시설 및 기존 복지기관들의 여가서비스 개편이 필요함

##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현황

○ 2023년 기준 한국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친**목단체활동 참여율**이 **54.2%**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활동 33.3%**, 학습활동 13.3%, 동호회 활동 6.6%, 자원봉사활동 2.5%, 정치사회 단체활동 1.3% 등의 순으로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노인이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은 친목활동이 4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여행 및 관광활동 44.6%, 취미활동 38.6%, 종교활동 28.6%, 자원봉사활동 12.6%, 동호회활동 12.3%, 교육 및 학습활동 10.7%, 정치 사회활동 4.7% 등의 순이었음

○ 모든 사회참여활동 유형에서 **연령이 적은 집단의 사회참여활동 참여 희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다만 자원봉사활동, 교육 및 학습활동, 종교활동의 경우 80~84세와 85세 이상 연령군의 참여 희망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타 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3. 노인의 정보화 현황

○ 스마트 기기 활용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유율과 보유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률을 살펴보면 **노인의 76.6%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68.8%가 사용**하였음. 컴퓨터는 20.6%가 보유하고 13.2%가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워치는 2.1%가 보유하고 1.9%가 사용하는 등 스마트폰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음

[표 4] 노인의 스마트 기기 사용 환경 및 사용률

(단위: %)

| | 인터넷 이용 가능률 | 스마트폰 | | 컴퓨터 | | 스마트워치 | |
|---|---|---|---|---|---|---|---|
| | | 보유율 | 사용률 | 보유율 | 사용률 | 보유율 | 사용률 |
| 전체 | 46.5 | 76.6 | 68.8 | 20.6 | 13.2 | 2.1 | 1.9 |
| 65~69세 | 64.4 | 94.9 | 90.7 | 32.5 | 23.4 | 4.0 | 3.7 |
| 70~74세 | 48.3 | 84.2 | 75.6 | 19.9 | 12.9 | 1.8 | 1.6 |
| 75~79세 | 38.6 | 72.3 | 60.6 | 13.9 | 7.8 | 0.9 | 0.8 |
| 80~84세 | 26.9 | 55.0 | 43.4 | 10.3 | 3.2 | 0.8 | 0.6 |
| 85세 이상 | 21.6 | 35.7 | 26.7 | 8.5 | 2.3 | 0.0 | 0.0 |

주: 1)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강은나 외, 202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데이터를 재분석함.

○ 스마트 기기 보유율과 사용률은 연령군별 차이를 보이는데 모든 기기에서 낮은 연령군의 보유율과 사용률 모두 높은 경향을 보임.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현재 **노인의 67.2%**는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어렵다+매우 어렵다)을 느끼고 있었음

○ 기능별로 살펴보면, 기본적인 메시지 송수신은 74.7%가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자상거래(12.0%)나 키오스크 이용(17.9%)과 같은 고급 기능은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남. 이와 같은 디지털 격차는 정보화 사회에서 노인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서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4. 맺음말

○ 우리나라 노인의 81.3%는 여가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 **96.5%는 '휴식 중심의 '소극적' 활동**에 참여 중임.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활동의 참여율과 참여 유형은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두 가지 활동 모두 참여율이 낮고 소극적 활동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이러한 연령군별 여가문화·사회참여 활동의 차이는 여가문화시설 이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시설 유형별 주된 이용자의 연령군이 상이한 특성을 보임. 경로당은 85세 이상, 노인복지관은 75~80세, 사회복지관과 노인교실은 75~79세, 공공 및 민간 여가문화시설은 65~69세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음. 이는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함

○ 특히, **농어촌 지역과 같이 여가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동 서비스나 시설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해야 함. 또한, 연령대별 선호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함

○ 현재 노인들이 사회참여활동은 평균 1.1개로 대부분 친목활동과 종교활동 중심임. 80세 이상부터는 1개 미만으로 사회활동참여율이 매우 낮음. **신규 노인층의 진입과 노년층의 특성 변화**(활동적 노인 증가, 긍정적 노인상의 확대, 노인정책 확대에 따른 노인의 삶 안정화 등)(이윤경 외, 2021)로 **앞으로의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대화형 AI의 발달,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은행 점포 수 감소, 온라인 중심의 각종 예매서비스 등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르게 정보화되고 있으며, 노인의 67.2%는 이러한 변화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단순한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화에 대한 적응기제 마련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 이와 함께, 실전 연습을 통해 적응에 대한 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고령친화정책과]

○ 전북자치도는 다양한 고령친화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25년 노인여가복지시설 7,214개소**(경로당 7,187개소, 노인복지관 27개소) **운영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공용 와이파이 설치지원, 경로당·노인복지관 평생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노인복지관 기능활성화 등)

* '25년 총 사업비 : 36,986백만원(국비 26%, 도비 18%, 시군비 56%)

○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439,263명으로('24.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도 전체 인구의 약 25.26%를 차지함. 2020년부터 사회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어, 건강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고령자 여가를 지원하는 사례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음.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 및 치매돌봄 등을 위한 **'노인전용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니어 여가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들이 있음[2)]

○ 국내에서도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음. **스마트 어르신놀이터 '시니어파크'**(서울 광진구)**, 신노년 여가 지원을 위한 '하하센터*' 조성 사업**(부산시)을 하고 있음. '하하센터'의 경우 기존 노인 세대보다 연령 기준을 낮추어 60세 이상 시니어를 참여 대상으로 함

* '하하센터'(Happy Aging! Healthy Aging!) : 엑티브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응접실, 활동실, 음악실, 독서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시설

○ 전북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시니어의 능력과 재능을 다양한 재능기부·자원봉사 등과 연계하여 사회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활성화, 55세 미만 예비 고령자에 대한 은퇴준비 교육이나 컨설팅과정에서 '여가' 관련 계획 준비도 함께 안내가 필요함. 특히, 기존 노인여가시설 특화프로그램 개발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들이 요구됨

2) 고령자 천만 시대, 경남 시니어 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경남연구원 브리프 제236호, 250210) 참고

# 참고 2023 노인실태조사 결과(요약) (보건복지부, '24.10.)

□ '2023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08년 이후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며, **2023년 조사**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65~69세 인구 비율이 35%에 육박하고, 8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를 넘어선 시점에 실시되어, 한국 노인의 현황과 변화상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노인실태조사 개요**

- 조사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 기간 : 2023년 9월 4일 ~ 11월 12일
- 조사 방식 : 조사원 176명이 각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
- 조사 문항 : 191개 문항 (세부문항 포함 시 총 661개)
- 응답자 구성 : 총 10,078명 (남성 43.9%, 여성 56.1%)

## □ 2023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

### ①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신노년층 확대

-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확대**가 나타났으며, **일하는 노인의 비중도 지속 증가함**

* (연간 가구 소득) 2020년 3,027만원 → 2023년 3,469만원 (442만원↑)
(금융 자산 규모) 2020년 3,213만원 → 2023년 4,912만원 (1,699만원↑)
(부동산 보유율) 2020년 96.6% → 2023년 97.0% (0.4%p↑)

** (고졸) 2020년 28.4% → 2023년 31.2% (전문대 이상 졸업) 5.9% → 7.0%

< 소득 및 자산 현황 >

(단위 : 만 원, %)

| 구분 | 2008 | 2011 | 2014 | 2017 | 2020 | 2023 |
|---|---|---|---|---|---|---|
| 연간 가구 소득 (만 원) | 1,688 | 2,161 | 2,305 | 2,590 | 3,027 | **3,469** |
| 연간 개인 소득 (만 원) | 701 | 849 | 959 | 1,177 | 1,558 | **2,164** |
| 금융 자산 규모 (만 원) | 1,588 | 2,554 | 3,142 | 3,632 | 3,213 | **4,912** |
| 부동산 자산 규모 (만 원) | 16,648 | 21,742 | 21,342 | 24,546 | 26,183 | **31,817** |
| 부동산 자산 보유율 (%) | 81.0 | 81.4 | 89.1 | 91.3 | 96.6 | **97.0** |

**② 재산 상속 등에 대한 가치관 및 사회활동 형태 등 변화**

- ▲노인 연령, 재산 상속, 장사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 ▲경로당 이용률 감소 및 친목 단체 참여율 증가, ▲스마트폰·컴퓨터 보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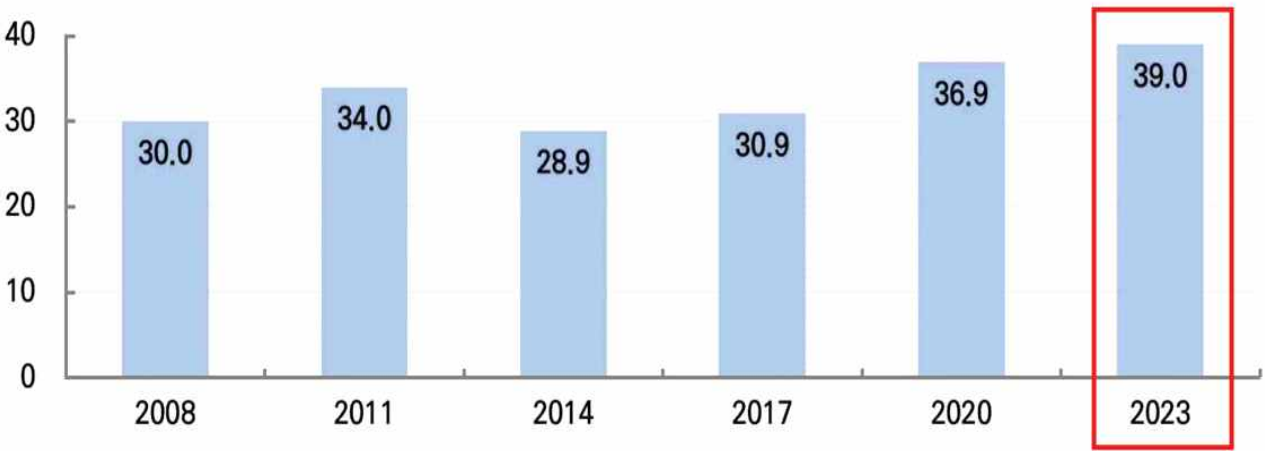
* 2020년 대비 스마트폰 보유율은 56.4%에서 76.6%(20.2%p↑)로, 컴퓨터 보유율은 12.9%에서 20.6%(7.7%p↑)로 상승

<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생각 >




→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나타나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

< 일을 하고 있는 노인 비중 (단위 : %) >




→ 일을 하고 있는 노인 비중이 지속 증가(2017년 30.9%→2020년 36.9%→2023년 39.0%)하고 있으며, 종사 직종은 단순 노무 33.0%, 농림어업 숙련노동 20.3%, 서비스 종사자 14.4%, 판매 종사자 12.5% 등 순으로 나타남

### ③ 건강 상태 지표의 개선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 증대

- 우울증상, 낙상사고, 외래진료 등 건강 상태 관련 다양한 지표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 이용 비율이 큰 폭 증가**

  * 돌봄제공자 유형 : 1위 가족원 81.4%, 2위 장기요양 30.7%, 3위 친척·이웃 20.0%

< 돌봄제공자 (단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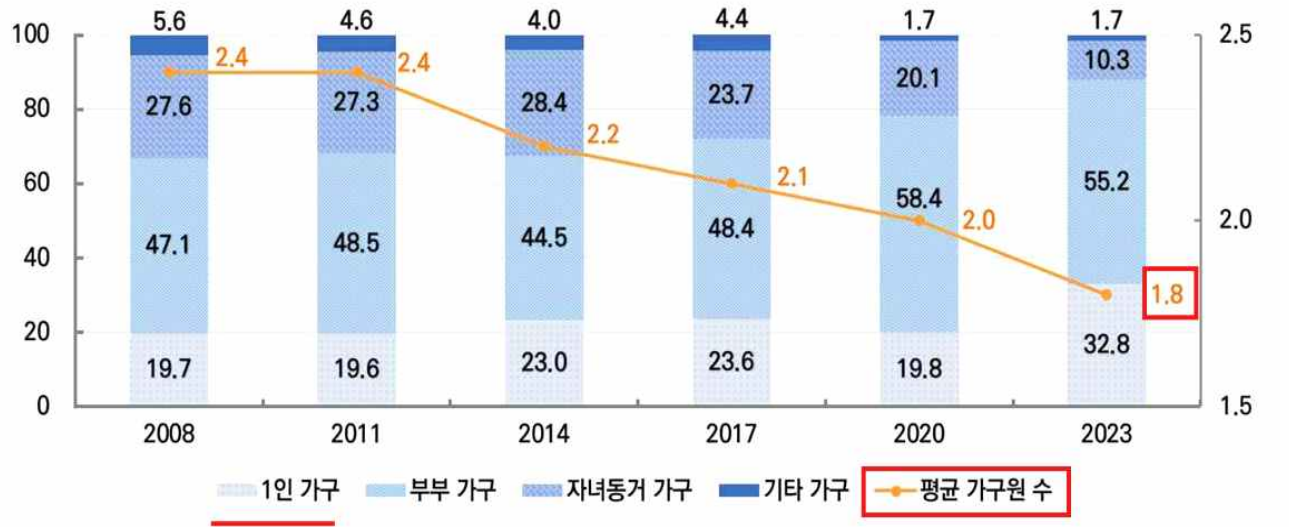



### ④ 가구 구성의 변화와 1인 가구(독거노인)의 특징

-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자녀동거 가구는 감소하였으며, 1인 가구는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남

  * 1인 가구(독거노인)의 비중은 32.8%로 2020년 대비 13.0%p 증가했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감소(2020년 20.1% → 2023년 10.3%)

< 가구 형태 및 평균 가구원 수 (단위 : %, 명) >



# 2023년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

## 가족관계

### 평균 가구원 수




### 평균 생존 자녀 수




## 경제활동

### 일을 하고 있는 노인 비중




### 연간 가구소득




### 가구소득 구성




## 건강 및 돌봄

### 만성질환(2023년)

노인의 **86.1%**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
전체 노인의 평균 만성질환 수는 **2.2개**

만성질환 보유율




### 우울




## 노후생활

###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인식

조사 연도별 평균




연령대 비율(2023년)



# 4. 고령화 시대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 (국토연구원)

## ≪ 연구요약 ≫

◇ 고령화 시대의 고령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현황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마련의 정량적 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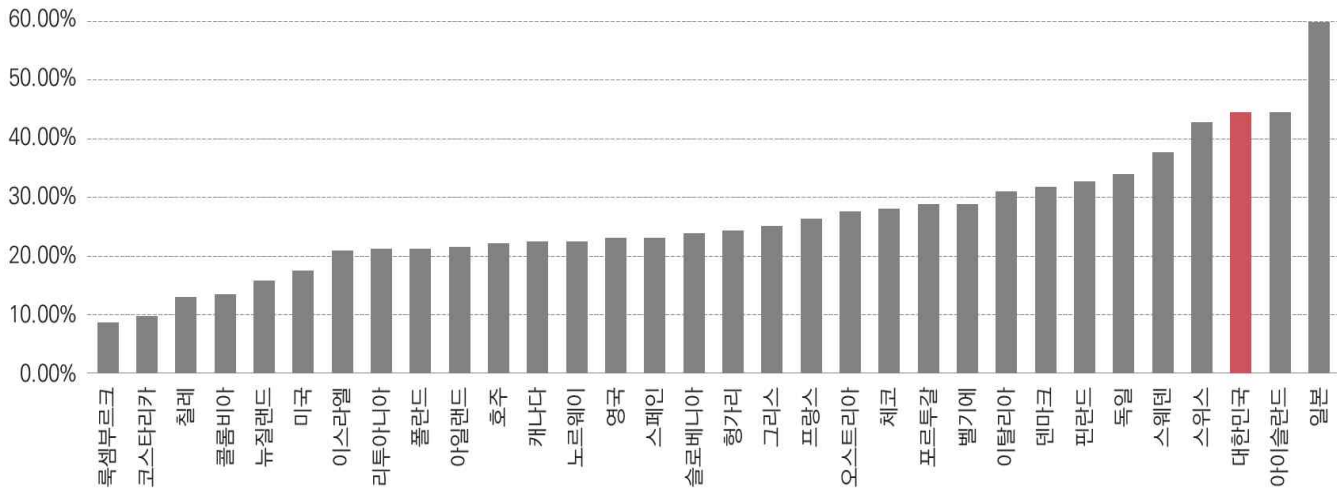
## □ 분석목적

○ 고령화 시대의 고령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현황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마련의 정량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활용데이터: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안전부(MOIS),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통합데이터 지도의 통계 및 보도 자료 참조

## □ OECD 국가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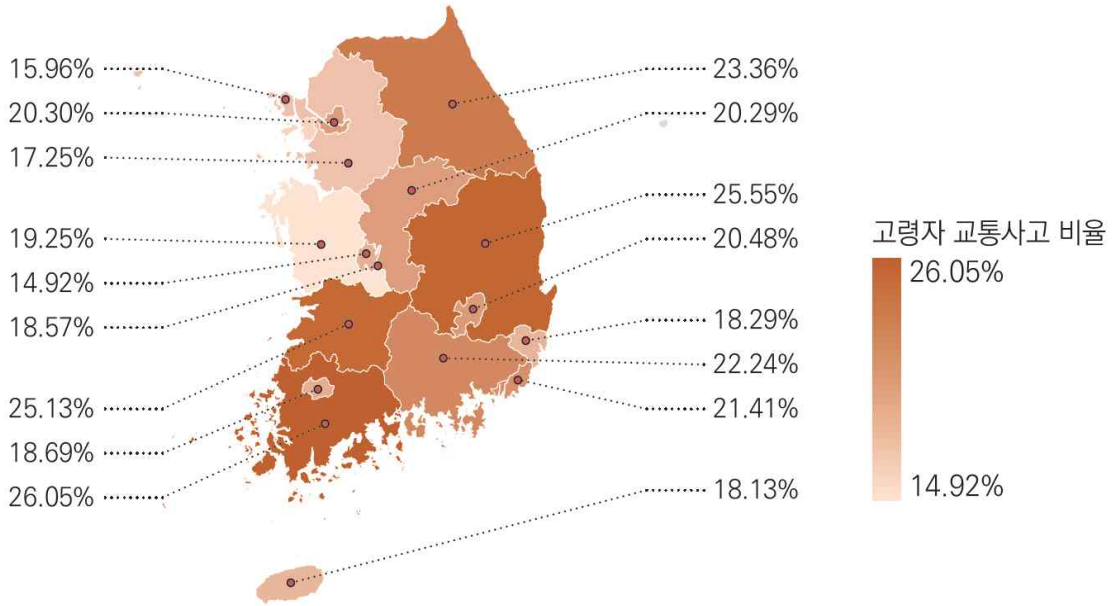
○ 대한민국의 전연령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44.41%로 OECD 국가 중 일본과 아이슬란드에 이어 3위 수준에 위치함 (2021년 기준)



## □ 시도별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 및 시도별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비 편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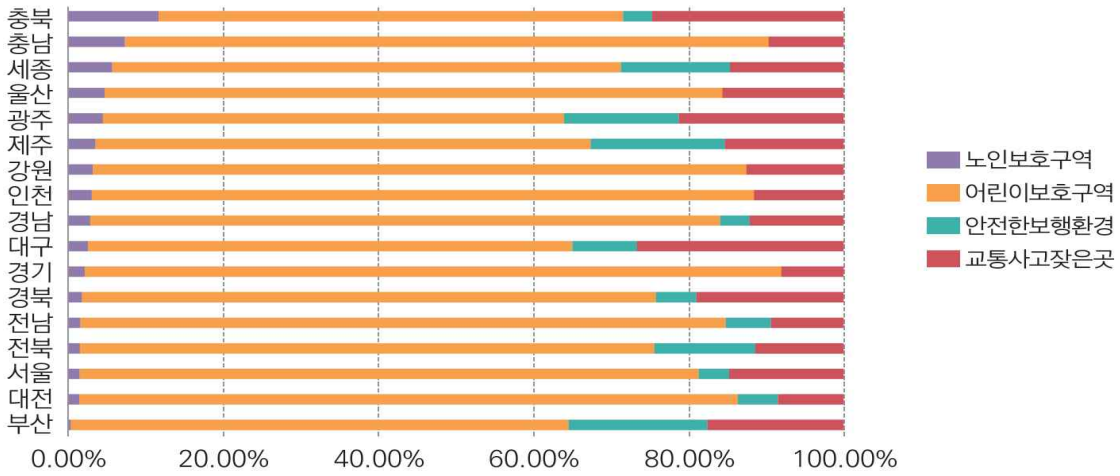
○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은 전남(26.05%), 경북(25.55%), 전북(25.13%)이 가장 높고, 세종(14.92%), 인천(15.96%), 경기(17.25%)가 가장 낮음 (2023년 기준)

〈시도별 고령자 고통사고 비율〉




○ 반면,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전남, 경북, 전북의 고령층과 관련된 교통안전환경개선(노인보호구역) 사업비 편성 비율은 하위권(전남 1.54%, 경북 1.74%, 전북 1.45%)으로 미흡한 실정 (2021년 기준)

〈시도별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비 편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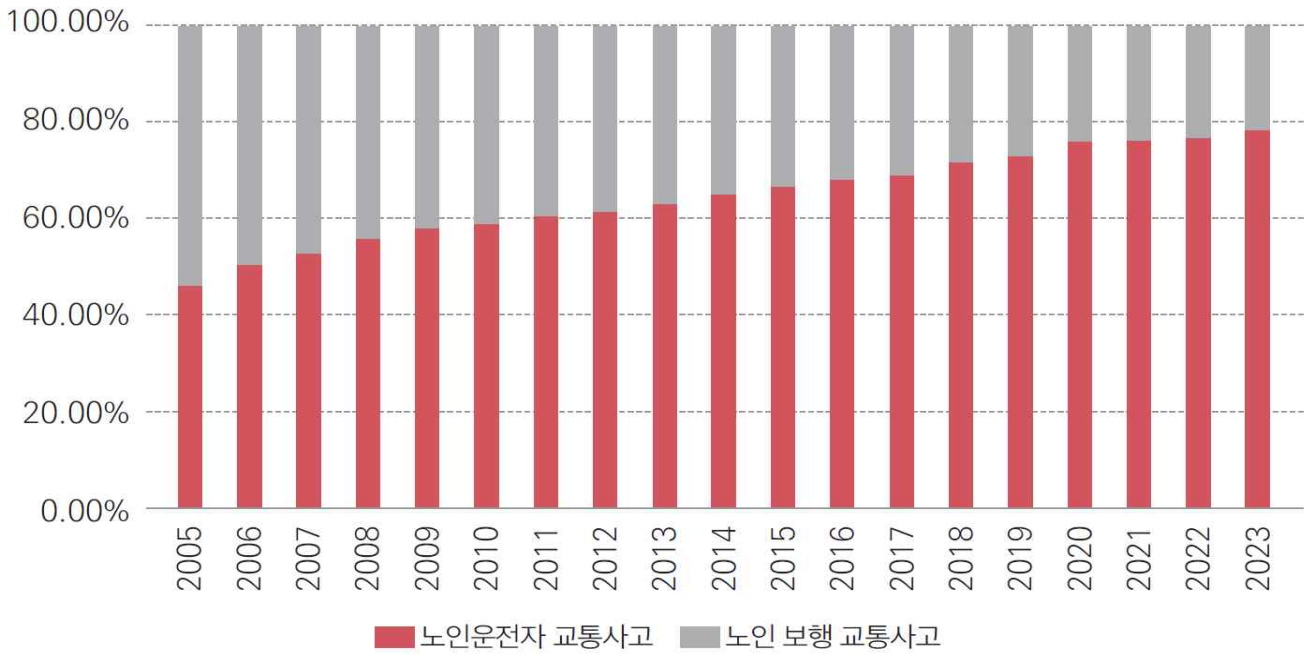


##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 고령자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부터 고령보행자 사고보다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50.34%), 2023년 기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고령자 교통사고의 78.39%를 차지함

- 노인보호구역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전략 외에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비전 개선 및 지자체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

〈고령운전자 ·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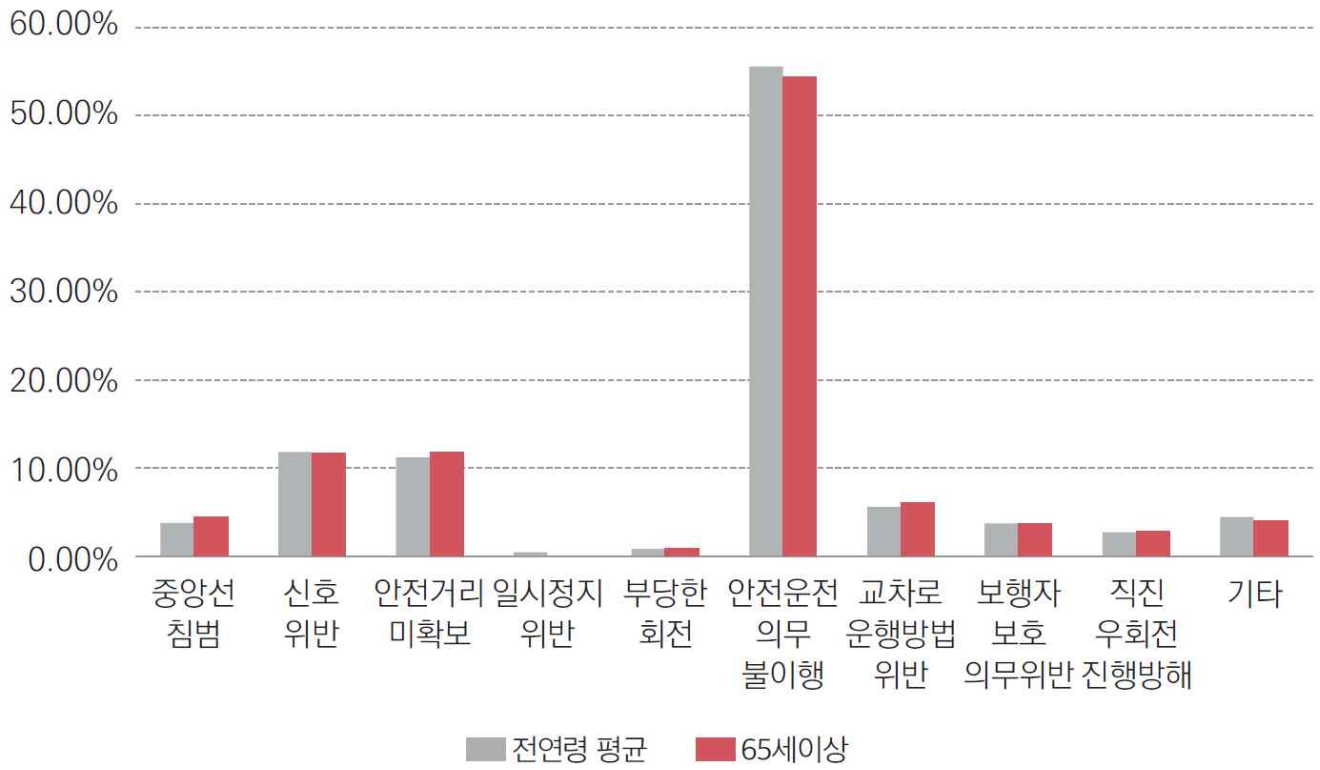



○ 2020~2023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209,654건에서 198,296건으로 감소하였으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31,072건에서 39,614건으로 증가하여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법규위반 유형별 비율

○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와 비교하여 중앙선 침범(평균 3.72%; 고령자 4.46%), 안전거리 미확보(평균 11.21%; 고령자 11.79%), 부당한 회전(평균 0.73%; 고령자 0.86%),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평균 5.58%; 고령자 6.03%) 등의 법규위반 비율이 높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법규위반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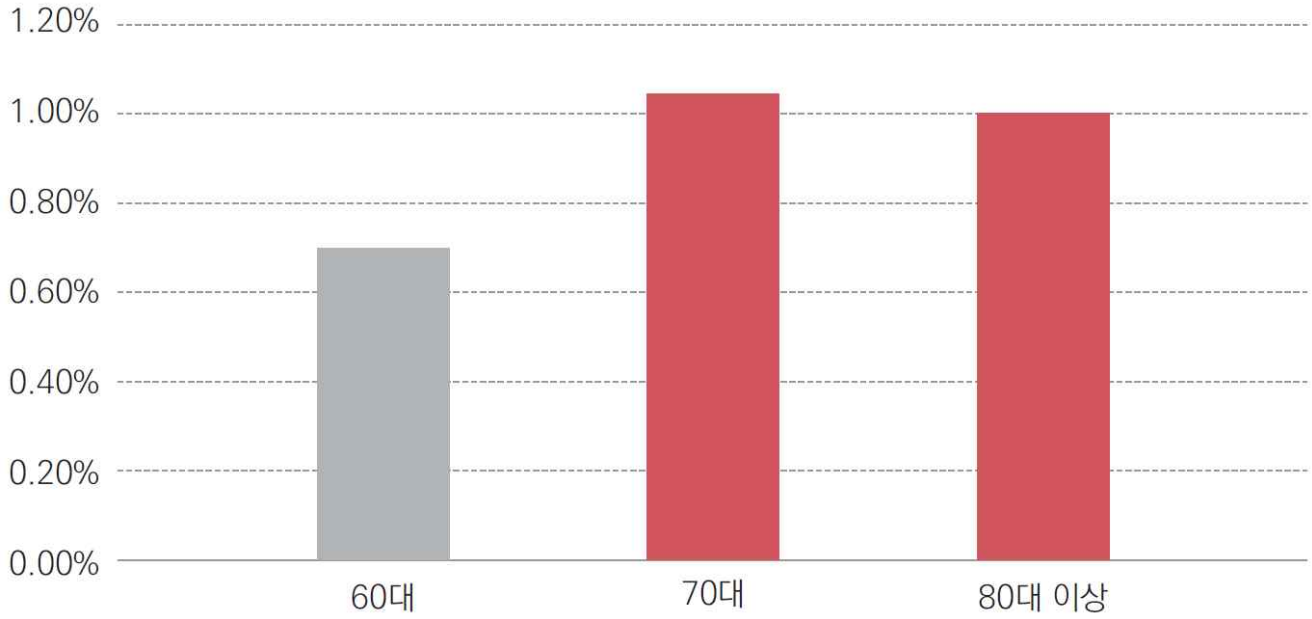



## □ 고령운전자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운전사고 비율

○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운전자사고 비율이 60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60대 0.77%; 70대 1.07%; 80대 이상 1.06%)

- 70세를 전후로 해당 법규위반 관련 교육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제도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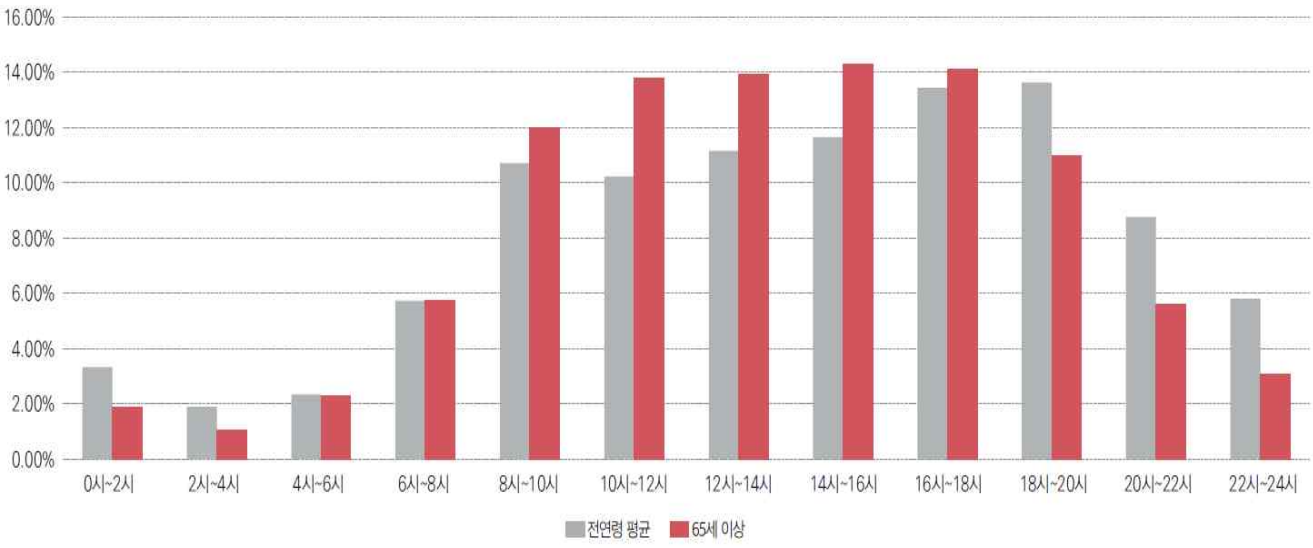
〈연령대별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운전자사고 비율〉




##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시간대별 비율

○ 고령자의 활동량이 가장 많은 8:00~18:00 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시간대별 비율〉



##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전북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총 4,135건으로 집계되고 있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3년 전북자치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830건 중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총 1,46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경찰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완료하였으며, 효과분석 결과, **고령운전자 1명당 면허반납 시 교통사고는 0.0118건, 사회적 비용은 42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분석 연구", 2024.1.9.,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북자치도에서는 고령 운전자(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시 부안('24년부터 3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교통카드, 현금,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음

○ 참고자료 1에 따르면 '23년 반납실적 5,131명 중 6개 시지역(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에서 4,452명이 반납하여 87%를 차지하고 있고, 8개 군지역은 반납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최근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에 따르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대중교통 의존통행자는 외부활동이 위축되어 농촌지역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국토연구원, '24.8.19.

○ 이에 따라 고령자 운전 면허 반납 실적 증대 방안과 더불어 고령자의 활동행태에 입각하여 의료 서비스, 전통시장, 여가복지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대중교통 서비스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을 체계화, 효율화하여 대중교통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허들을 제거하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는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운전면허 반납은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음

○ 상위법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23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이 신설되면서 **65세 이상인 자를 고령운전자**로 보고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여 **세종, 인천, 전남의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 상위법 부재로 **7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경기도, 서울은 65세로 규정**하고 있었음

○ **전북자치도 조례 및 전북 모든 시·군 조례가 고령운전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65세로 개정**하여 **운전면허 반납 대상 확대 방안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스티커 제작·배부에 대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 1 시군별 고령 운전자(70세이상) 운전면허 반납 현황

(단위 : 명)

| 시 군 | 반납현황 | | | | | | 지원 금액(방법) | 비 고 |
|---|---|---|---|---|---|---|---|---|
| | 합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
| **합 계** | **15,606** | **342** | **3,014** | **3,467** | **3,652** | **5,131** | | |
| 전 주 | 5,539 | - | 1,000 | 1,339 | 1,200 | 2,000 | 1인당200천원(교통카드) | 조례개정('20.10.08)<br>·면허증소지자지원<br>·100천원→200천원지원 |
| 군 산 | 2,230 | - | 743 | 437 | 400 | 650 | 1인당200천원(지역상품권) | '23년부터20만원지원 |
| 익 산 | 2,431 | - | 224 | 576 | 640 | 991 | 1인당200천원(교통카드) | 조례개정('21.2.10)<br>·면허증소지자지원<br>·100천원→200천원지원 |
| 정 읍 | 1,184 | 198 | 201 | 207 | 328 | 250 | 1인당200천원(온누리상품권) | |
| 남 원 | 882 | 100 | 100 | 191 | 200 | 291 | 1인당200천원(현금) | |
| 김 제 | 885 | - | 194 | 196 | 225 | 270 | 1인당200천원(지역상품권) | |
| 완 주 | 211 | - | 29 | 28 | 59 | 95 | 1인당200천원(지역상품권) | |
| 진 안 | 300 | - | 55 | 66 | 90 | 89 | 1인당200천원(지역상품권) | |
| 무 주 | 246 | 44 | 50 | 54 | 45 | 53 | 1인당200천원(지역상품권) | |
| 장 수 | 172 | - | 34 | 40 | 53 | 45 | 1인당200천원(지역상품권) | |
| 임 실 | 188 | - | 37 | 36 | 58 | 57 | 1인당200천원(지역상품권) | |
| 순 창 | 289 | - | 50 | 75 | 74 | 90 | 1인당200천원(지역상품권) | |
| 고 창 | 517 | - | 150 | 117 | 130 | 120 | 1인당200천원(지역상품권) | |
| 부 안 | 532 | - | 147 | 105 | 150 | 130 | 1인당300천원(지역상품권) | 24년부터 30만원지원 |

※ 국도비 보조사업(3,500) 외 시군(1,631) 자체사업 반납실적 반영

## 참고 2 시도별 고령 운전자 기준 현황

| 시 도 | 조례명 | 고령 기준 | 비고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70세** | **'22.1.21. 제정**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65세 | '23.12.29. 제정 |
| **경기도** |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65세** | **'21.7.14. 제정** |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조례 | 65세 | '24.11.11. 제정 |
| 경상북도 | 경상북도 고령운저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65세 | '23.4.10. 제정 |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65세 | '23.5.22. 제정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65세 | '24.9.25. 제정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65세** | **'19.3.28. 제정**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에방에 관한 조례 | 70세 | '19.9.30. 제정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 70세 | '21.12.30. 제정 |
| 전라남도 |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 70세 | '21.7.29. 제정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65세 | '23.10.10. 제정 |

# 5. 야영장 기본시설의 전기 사용량 기준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연구요약 ≫

◇ 야영산업 활성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전기 사용량 기준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적정 기준안 제시

## □ 연구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야외 공간에서 즐기는 야영 활동이 확산되면서, 야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와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 전기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본시설의 전기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하절기와 동절기 야영활동시에는 전력이 부족하여 가족단위 야영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현장에서는 야영장에 따라 전력 공급량이 다르게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야영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주요 불편사항 및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이용자, 야영장 사업자, 지자체 담당자 등이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 적용을 위하여 어떤 행위들이 이행되는지 검토하여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야영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준 개선 및 검토가 필요

○ 이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의 방향과 적정 기준안을 제시하기 위함

## □ 야영장 전기 사용 기준 현황

○ 전기 사용량 제한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 제1호 나목에서 600와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해당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용자가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600와트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사업자가 안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공간에서 600와트 이하로 전력 사용

○ 요약하면, 동 규정은 안내 미이행에 따른 사업자 처벌은 가능하지만, 600와트 이상을 사용하는 이용자 및 지자체 담당자와는 관련성이 낮음

○ 이는「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7에 포함되어 있으나 제2호 전기사용 기준이 아닌 제1호 화재예방기준에서 포함하고 있는 점과 화기용품과 동일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600와트 제한 규정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표 1 >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

| 구분 | 안전·위생 기준 |
|---|---|
| 1. 화재 예방 기준 | 가. 생략<br>**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 (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 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br>다. 생략<br>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br>마. 생략<br>바. 생략<br>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br>아. 이하 생략 |
| 2. 전기 사용 기준 |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 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br>나.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br>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선관 (가요(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7

## □ 야영장 전기 사용 관리 현황

○ 야영장 사업자는 주로 20A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2개 ~ 6개의 텐트 사이트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전기설비를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야영장에서는 이러한 전기 설비 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

- 예를 들어 4개 사이트가 20A 누전차단기를 공유하고 있다면, 1개 사이트당 1100와트 정도를 나눠 사용하게 되는데, 4개 사이트 가운데 1개 사이트만 이용자가 있다면 4400와트 전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임

※ 전력(와트) = 전류(암페어) × 전압(볼트)

○ 600와트 단위로 제한할 수 있는 안전인증을 받은 누전차단기 부재로 일부 야영장에서는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음

○ 대부분의 야영장 사업자는 600와트 전기 사용량 제한은 야영장 기본 시설인 야영덱 단위에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식하여 안내하고 있고,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의 제한 규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야영장 조성 인허가 단계에서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으로 전기설비를 갖추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있고, 야영장업 등록단계에서는 600와트 제한 관련 규정의 적용기준이 전무하여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 야영장 이용자가 사용하는 전기용품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 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는 사업자가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처럼 안내만 이루어질 뿐, 실제 사용여부는 확인이 어려움

○ 종합적으로「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제1호 나목에서 전기 사용량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실제 야영장 현장에서 전기 화재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종합 분석 및 주요 이슈

○ 기본시설에 대한 전기 사용량 제한 요건이 있는 반면, 동일한 천막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글램핑 텐트에 대한 전기 사용량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 대부분의 이해관계자(이용자, 사업자, 지자체 담당자)가 관련기준의 공간적 범위(사방이 밀폐된 야영용 이동식 천막 안) 적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전기 및 안전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① 전기 화재 위험과 관련하여 전기 사용량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이고, ② 전기 사용량 보다는 전기 설비와 관리 측면에서 화재 위험성이 더 높으며, ③ 전기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류량이 높아져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일정수준 이하의 소량의 전력량(2000와트 이하, 10암페어 이하)에서는 화재 위험을 높인다는 명확한 근거는 미흡하다는 의견임

- 안전 전문가는 600와트 수준에서는 전력 소비로 인한 화재 위험성보다 미인증 제품의 사용, 미자격자의 전기설비 설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체계 미흡으로 인한 화재 확률이 더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행 야영장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에는 전기 설비와 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흡함

○ 전기 사용량을 증가시킬 경우, 연동하여 전기설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 설비 교체비용 부담 가중으로 설비 교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합리적인 전기 사용량 기준 개선안을 발굴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한 결과 ① 1안(기준 완화), ② 2안 (기준 유지), ③ 3안 (기준 삭제) 중 이해관계자 모두 1안(기준 완화)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안으로 요구함

○ 이해관계자의 요구는 전기 사용량을 현행보다 급격하게 완화할 경우, 야영장이 전기공급 능력에 따라 양극화될 수 있으며, 과도한 전기사용에 따른 요금 및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전력량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견임

○ 또한, 전기 화재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나는 전선 용량의 문제와 인증된 누전차단기의 사용을 전제로 규정 적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전기 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전기 사용량 제한 규정 적용 범위는 야영장 시설의 기본시설 또는 야영덱으로 명확히 하여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20A 누전차단기 사용을 전제하고, 누전차단기 블록 안에서 개별적인 기본시설 또는 야영덱에 전기 화재 안전성을 최소한으로 담보할 수 있는 2,000와트 이하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함

○ 따라서 누전차단기 1개 블록 안에 3개 ~ 4개의 기본시설(야영덱)을 포함하면 개별적인 기본시설 또는 야영덱에는 1,500와트(정확히는 1,467와트), 또는 1,100와트의 전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준으로,

○ 이는 현행 야영장의 전기 설비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야영장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전기 사용량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2,000와트 이하로 제공하여 안전성은 유지하는 기준임

## □ 정책제언

○ **야영장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안내 의무 규정 개선 필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제1호 화재 예방기준 나목에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천막안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용품의 총 전력량이 600와트 이하라는 것과 화기용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을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 사업자가 1회 안내를 하면 이후 야영장 이용자가 사용 기준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다시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야영장 사업자에게 야영객이 야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야영을 종료할 때까지 사용 가능한 전기용품의 총 전력량과 화기용품의 사용 금지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도록 야영장 사업자의 화재 예방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 감독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동식 야영용 천막과 글램핑 텐트와의 형평성 제고 노력 필요**

- 현실적으로 글램핑 텐트도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고 있고, 사방이 밀폐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전력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전기 사용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전기 사용량 제한 관련 규정에서 글램핑 텐트와 이동식 야영용 천막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전기 설비 설치와 정기적인 전기 설비 점검 기준 마련 필요**

- 지자체 담당자 업무메뉴얼의 안전·위생 점검 리스트에는 전기 사용량 제한에 대한 항목은 없으며, 누전차단기 개수와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항목이 전기 관련 항목의 전부임
- 따라서 야영장에서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전기 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정기적인 전기 설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 업무매뉴얼 등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야영장 기본시설에서 제공하는 소량의 전기 사용량과 야영장 화재 위험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필요**

-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을 전선 과열과 전기설비의 노후화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전기 사용의 범위인 600와트에서 4400와트 사이의 전기 사용량이 정상적인 전선 과열과 전기설비의 노후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 또는 문헌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움
- 전기 및 안전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전기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류량이 높아져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소량의 전력량(2000와트 이하, 10암페어 이하)에서는 2000와트가 600와트보다 화재 위험을 높인다는 명확한 근거는 미흡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명확한 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소량의 전기 사용량을 전제할 경우에 전기 사용량이 야영장 화재 위험성을 높이는 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 6.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운영 개선 방안(육아정책연구소)

## ≪ 연구요약 ≫

◇ **저출생에 따른 유아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지역의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에 대한 적정규모 유아배치를 위한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 Ⅰ. 배경 및 문제점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정부는 2023년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기관의 소규모화 등으로 인한 유아교육 공급구조의 전환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제시

○ 올해 2024년도는 출생아 수가 처음 20만 명대로 감소한 2020년생이 유치원에 입학한 해로, 유치원은 인구 절벽의 최전선에 위치한 교육기관으로 유치원 재원 유아 수는, 2018년도 대비 2022년도에 18.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5년 간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유아 인구와 유치원 재원 유아 수의 감소는 결국 유치원의 소규모화 등 유아교육 공급구조에서의 변화, 유아배치계획 등 향후 변화에 대응이 요구되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공립 유치원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 정부는 출생아 수 급감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충원율 하락,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기존 국·공립 기관 형태를 통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

○ 유아교육기관의 신·증설 및 운영 개선 계획에서 유아 수 변화를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고, 농어촌 등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단설과 같은 교육여건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임에도 교육적 환경이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치원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Ⅱ.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개선 사업( “한울타리유치원 사업” ) 현황

### 가. 사업 현황

○ 정부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운영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을 추진**하여 **복수의 소규모 유치원이 상호 협력,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돌봄, 통학차량 운행 등 소규모 유치원 단독으로 제공할 수 없는 프로그램·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하나의 규모가 큰 유치원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는 사업

○ 2024년 3월 기준 한울타리유치원의 운영은 6개 시도,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통합형 또는 거점형을 선택하였으나 충남은 공동연계형으로 운영

※ 전북은 4개 지역(군산, 익산, 정읍, 김제)에서 거점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나. 사업 내용 및 현장의견

#### 1) 사업을 통한 상호 협력 내용

○ **공동연계형**으로 운영하는 충남의 경우,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여 교육과정 설명회 공동 개최, 특색 교육활동, 현장체험행사 공동 진행,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 편성 상호 지원, 통합차량 운영,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공동 운영 등을 진행

○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대구시는 소규모 유치원이 갖고 있는 약점들, 즉 연령별 학급 편성이 되지 않고 혼합연령 반 구성을 해야 하는 점, 방학 중 점심제공이 어려운 점, 통학버스 이용이 안 되는 점, 사립에 비해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점 등이 해소

○ 대전의 경우는 **거점유치원 형태** 운영을 통합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협력으로 유치원 간 유대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운영

### 2) 면담을 통해 알아본 현장 의견

○ 한울타리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비**하고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비용지원으로 체험활동 횟수 증가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연령별 학급 편성이 가능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향**된 것으로 평가

○ **저녁 돌봄**과 관련해서 통합을 통해 이용 아동이 증가하여 **19시까지 상시 운영**에 따른 **학부모의 이용 만족도가 상향**

○ **애로사항**으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재구조화**해야하는 경우에 **많은 비용이 소요**, **공기 지연**에 따른 개원 지연 등의 의견이 있었고, 사업 참여 운영 계획 시 교육청 내 사업부서와 시설담당부서 간 의견 일치가 어려워 유치원 사업부서 계획의 실현에 **적극적 협력이 어려움**

○ 장학사 면담에서,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통폐합에 대하여 개별 모(母) 초등학교나 지역사회가 반대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나 유아를 위한 진정한 **질 좋은 유아교육의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통폐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지

○ 시·도 장학사들의 전반적 의견은 지난 몇 년간 추진된 **유치원 공립 확대 정책**의 결과로 급격히 확충된 병설유치원이 **출생아 수 지속 감소로 원아모집이 되지 않는 현 상황**을 맞아 **통폐합**의 방향으로 관련 부서 서로 협력하여 재정비를 추진

## Ⅲ.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의 이상적 모형**: 병설유치원의 적정 학급 수 구성에 대한 원장/원감의 의견은 평균 2.5학급이며, 3학급이 43.9%, 1학급이 24.1%, 2학급이 21.6%로 높게 나타남

○ **소규모 유치원의 통합 운영**: 통합 운영 시 고려할 요소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은 교육환경 조성이며, 다음은 원장/원감과 교사는 등·하원 조건, 학부모는 학부모의 의사를 선택

- 유치원 통합에 대해 원장/원감은 찬성이 62.9%, 교사는 반대 51.0%, 학부모는 반대가 44.7%
- 통합 운영으로 기대되는 장점은 연령별 학급 편성과 또래경험이며, 원장과 교사는 연령별 학급편성을 각각 42.9%, 25.3%로 가장 많이 선택, 부모는 또래경험을 43.9%로 가장 많이 선택
- 유치원 통합 운영의 단점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등·하원 어려움이 과반에 가까운 비율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것은 원장/원감은 초등학교 통폐합(25.1%) 가능성, 교사와 부모는 소규모 유치원의 장점 소실을 각각 21.3%, 26.5%로 선택
- 통폐합을 고려할 때, 통학차량 기준 적정 등원 거리에 대해 원장은 편도 20분 이내가 43.1%로 가장 높았고, 10분 이내가 36.2%이며 응답 대상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다르나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통학 가능 거리에 대해 보다 허용적

○ **소규모 유치원의 운영 개선 방안 관련**: 조사 결과 원장의 경우, 2~4개원을 통합하여 3~5학급 병설유치원 운영이 36.0%로 가장 높음

- 교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은 행정인력 26.8%, 단독 운행 차량 21.4%, 인근 유치원 협력 지원 13.2% 순
- 소규모 유치원이 인근 타 유치원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 개선을 한다면, 가장 원활하게 협력·연계할 수 있는 부분(1+2순위)은 행사 공동 진행(68.9%)으로 나타났고,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공동 운영 26.3%, 교육과정 계획 협력 24.4%, 급식 도시락 공동 운영 22.9% 순

# Ⅳ.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유치원 운영 개선 방안

## 가. 소규모 유치원 간 통합

### 1) 고려 사항

○ **통학의 적정 거리**: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유치원 등·하원 시 **주거지로부터 20분 이내**여야 통합이 가능

○ **통합 대상 유치원의 규모**: 통합 운영을 고려할 때 1~2학급 운영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 시 연령별 1개 학급 이상**, 즉 **최소 3개 학급 이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유아 인원이 있어야 통합·증설된 유치원으로 운영이 가능함.

○ **학부모 동의**: 아동을 전원 시켜야 하는 경우에 통학 거리상의 문제 해결 방안, 교육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 개최, 개별적 요구 대응 방안 마련, 통합운영의 중심이 되어 유아들이 모이는 중심유치원의 학부모에 대해서 또래 규모와 교육과정 운영상의 장점 등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동의 받는 절차가 필요

○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통합적 운영을 원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 통합에 대한 교육청·학교 단위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통폐합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금에 비례하여 통합 인센티브를 **10억 원(유치원은 초등학교 정원의 1/4) 규모**로 책정하여 통합 유치원에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나. 병설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 **유치원 단독 독립 통학차량 운영**: 통합운영을 통해 유치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비교적 장거리로 통학해야하는 유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치원 단독의 독립 통학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지원

○ **유치원의 방학 중 급식 제공**: 방학 중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및 돌봄 시간의 이용을 위해 유치원 자체 급식 방안을 마련

○ **통합 운영 시 유치원 적응을 위한 지원**: 유치원의 통합 운영으로 인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이웃 유치원으로 전원에 따른 유아의 적응 지원, 통합운영 중심유치원은 3세 유아는 기존 유치원의 교사나 지원 인력이 최소한 일정기간 근무하여 유아의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 다. 병설유치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한 단설 방식 운영

○ **연령별 학급 구성**: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3, 4, 5세 각 연령별 학급을 최소 1개 이상씩 구성하고 학급 증설에 따른 교육개선을 교육청에서 지원

○ **원감직의 신설**: 증설된 4학급 이상(특수 1학급 포함) 유치원에는 겸임이 아닌 원감직을 두고 유치원 운영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적 환경을 구성

○ **유치원 통학버스의 운영**: 단설유치원과 동일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들의 통학 거리를 검토하여 통합된 유치원의 원활한 등·하원을 위한 유치원 전용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

## Ⅳ. 맺음말: 유보통합의 고려

○ 정부는 2023년부터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2027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으로의 전환**이 전면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예상

○ 유보통합의 상황을 수용하면서 앞서 제안한 유치원 설립, 운영 개선 방안들이 현실화될 때는 통합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면밀히 검토

- **첫째**, 통합기관의 설립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영유아배치계획의 수립**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둘째**,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기관 간 협력의 측면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통학버스 노선의 공유**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고 특히 유치원 통폐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유치원 접근성의 하락 문제는 어린이집과의 밀접한 협력과 상호 지원** 속에서 유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한편으로는, 유보통합 모델의 현장 적용 이후에는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적 운영, 협력적 상호 지원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지속 개발·공유**하며 **기관 간 협력적 운영의 성과를 홍보**해야 함

#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 1.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업종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사용비중의 감소 우려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예산안 분석 / 2024.10.) -

### 가. 현 황

○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 가능한 전국 단위 온누리상품권을 발행· 유통함으로써 구역 내 상인들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5년도 계획안에는 2024년(3,513억 4,800만원) 대비 394억원 증액된 3,907억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5년도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목표액**은 2024년(5조원) 대비 5,000억원 늘어난 **5조 5,000억원**이다.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며 보조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2025회계연도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3 결산 | 2024 계획(A) | 2025 계획안(B) | 증감 | |
|---|---|---|---|---|---|
| | | | | B-A | (B-A)/A |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 359,495 | 420,619 | 465,205 | 44,586 | 10.6 |
| 온누리상품권 발행 | 289,787 | 351,348 | 390,748 | 39,400 | 11.2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온누리상품권은 기존의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던 상품권을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통용되는 공동 상품권으로 대체하기 위해 2009년 7월에 최초 발행되었다. 기존에는 지류형상품권만이 발행되었으나, 이후 2019년 9월 모바일상품권, 2022년 8월 충전식카드형상품권 등이 신설되어 현재 3종류의 상품권이 발행 중이다. 지류형과 모바일형의 권종은 5천원부터 10만원까지 각각 2종· 5종으로 되어 있으며, 충전식 카드형의 경우 최초 5천원 이상 충전 후 100원 단위로 수시 추가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종류]

| 지류형 | 모바일형(온누리페이) | 충전식 카드형 |
|---|---|---|
|  |  |  |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이하 "전통시장 등")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이러한 **전통시장 등 내에 위치한 업체로 제한**되며, 해당 지역 외에 위치한 업체는 가맹점이 될 수 없으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각각의 사용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 등의 지정 요건]

| 구분 | 지정 요건 |
|---|---|
| 전통시장 | (점포 수) 도소매업·용역업 등 50개 이상<br>(범 위) 「유통산업발전법」 상 매장과 50% 이상 중첩되지 않을 것<br>(면 적) 1,000m$^2$ 이상 |
| 상점가 | 2,000m$^2$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업·용역업 점포가 있을 것(단, 기타 지정요건 있음) |
| 골목형상점가 | 2,000m$^2$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있을 것 |
| 상권활성화 구역 | 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br>② 상업지역이 50% 이상을 차지하며<br>③ 전체 도·소매, 용역점포의 수가 700개(인구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br>④ 실태조사 결과 인구·사업체 수가 2년 이상 감소하는 등 위축 또는 위축우려 |

○ 한편, 2009년 신규 발행 이후 2024년 7월까지 온**누리상품권의 총 누적 판매 실적은 22조 6,248억원**이다. 그 중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2조 8,536억원이 판매되었다.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회수 실적]

(단위: 억원, %)

| 구분 | 발행금액 | 판매금액 | 회수금액 | 누적회수율 |
|---|---|---|---|---|
| 2009년 | 200.0 | 104.6 | 63.1 | 60.3 |
| 2010년 | 900.0 | 753.3 | 638.3 | 81.8 |
| 2011년 | 2,400.0 | 2,224.3 | 1,809.8 | 81.5 |
| 2012년 | 4,060.0 | 4,257.7 | 3,862.1 | 86.8 |
| 2013년 | 5,000.0 | 3,257.8 | 2,918.3 | 87.7 |
| 2014년 | 6,360.0 | 4,801.0 | 4,676.4 | 90.7 |
| 2015년 | 7,381.0 | 8,607.2 | 7,818.7 | 90.8 |
| 2016년 | 10,030.0 | 10,945.8 | 10,858.4 | 93.4 |
| 2017년 | 12,850.0 | 10,742.6 | 11,169.8 | 95.9 |
| 2018년 | 15,016.3 | 14,916.0 | 14,703.5 | 96.5 |
| 2019년 | 20,074.1 | 16,852.8 | 16,622.4 | 97.0 |
| 2020년 | 40,486.7 | 40,138.5 | 34,084.8 | 92.9 |
| 2021년 | 31,573.1 | 31,721.4 | 33,808.6 | 95.8 |
| 2022년 | 35,391.2 | 27,034.4 | 25,259.8 | 95.4 |
| 2023년 | 20,241.8 | 28,536.6 | 30,563.3 | 97.1 |
| 2024년 7월 | 19,518.0 | 21,354.4 | 21.909.4 | 97.6 |
| **총 누계** | **231,482.1** | **226,248.4** | **220,766.8** | **97.6** |

주: 누적회수율은 해당연도 이전까지의 누적 회수금액을 누적 판매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나. 분석의견

○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의 **2025년 예산안 확대는 최근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용가능 업종 확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내의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권 사용 비중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가맹점 등록 허용업종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등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온누리상품권의 최근 판매액 추이를 살펴 보면, 2020년에 판매액이 대폭 증가하여 최고치(4조 138억원)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여 3조원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24년부터 판매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 7월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은 2조 1,354억원으로서, 전년도의 판매추이를 적용하면 금년 말까지 4조원 안팎의 판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9~2024년 온누리상품권 판매계획액 및 실제판매액]

(단위: 억원)

| 연도 | 판매계획액 (편성)(A) | 실제판매액(집행) | | 차이 (B-A) |
|---|---|---|---|---|
| | | 해당연도 7월까지 | 해당연도 말까지(B) | |
| 2019 | 20,000.0 | 10,144.8 | 16,852.8 | △3,147.2 |
| 2020 | 25,000.0 | 20,798.4 | 40,138.5 | 15,138.5 |
| 2021 | 30,000.0 | 20,756.7 | 31,721.4 | 1,721.4 |
| 2022 | 35,000.0 | 12,147.1 | 27,034.4 | △7,965.6 |
| 2023 | 40,000.0 | 14,999.8 | 28,536.6 | △11,463.4 |
| 2024 | 50,000.0 | 21,354.4 | *(40,626.0)* | *(△9,374)* |
| 2025(안) | 55,000.0 | - | - | - |

주: 1. 판매계획액은 각 회계연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름
2. 이탤릭 괄호( ) 안은 전년도의 집행추이를 적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러한 판매량 증가는 2024년부터 각 상품권의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를 종류별로 상향 조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월 정부는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를 종전의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3.3% 상향 조정**하였다.

○ 또한 2024년 9월부터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사용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하였다. 종합병원,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은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이었으나, 업종 확대 이후로는 사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들 업종 중 상당수는 일반 소

매업에 비해 지출단가가 높은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더욱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9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업종]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16제1항 관련 별표 1의 개정사항)

| 가맹점 등록완화 업종 | 해당 점포 |
|---|---|
| 교육서비스업<br>(입시학원 제외) | 음악학원, 미술학원, 외국어학원, 직업 훈련학원, 컴퓨터학원, 태권도학원 등 |
| 보건업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일반 의원 등 |
| 법무관련 서비스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
|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 세무사, 회계사 |
| 수의업 | 동물병원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흥신소, 사설탐정 서비스, 필체감정 서비스, 지문조사 서비스,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
| 골프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골프연습장 제외), 독립골프장 운영(숙박시설 미보유)<br>*다만, 중기부에 따르면 골프장운영업 추가는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실제 전통시장 등 내에 골프장은 1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업체 없음) |
| 노래연습장 운영업 | 노래방 운영, 동전노래방 운영, 노래연습장 운영(주점 제외)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점집, 철학관, 역리원, 역술원, 점술서비스 등 |
| 모피제품 도매업<br>(인조모피 등) | 가죽, 의복 도매업 |
| 담배 중개업·도매업,<br>잎담배 도매업 | 담배판매권이 있는 편의점, 슈퍼마켓, 전자담배 편의점 등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다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존부터 사용 가능하던 소상공인 업체 등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사용비중은 종전 대비 다소 반감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특히 「전통시장법」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모든 업체는 소득과 관계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

##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의 효과**는 크게 ① **정부의 할인 보조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력 확대 및 내수 진작 효과**와 ② **전통시장 등으로의 소비자 수요 전환 효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본 사용처 확대 조치는 정부의 할인 보조 확대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력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제고할 수 있겠으나, 전통시장 내에서 소상공인과 같은 기존 가맹점으로 소비자 수요를 전환시키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최근 충전식카드형 상품권 도입으로 인해 영세업자 및 중소 소상공인들은 **충전식상품권 매입시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등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매출액 대비 비중)]

| 구분 | 영세 가맹점 | 중소 가맹점 | | |
|---|---|---|---|---|
| 연간매출액 | 3억원 이하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신용카드 | 0.50%[1)] | 1.10% | 1.25% | 1.50% |
| 체크카드 | 0.25% | 0.85% | 1.00% | 1.25% |

주: 1) 2025년 1월부터 0.25%로 인하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2022. 1. 26.

○ 특히 골목형상점가와 같이 지정 자체가 소상공인의 상권 확대에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 확대로 인해 오히려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 외 업종으로 상품권 지출수요가 전환**됨으로써, 오히려 당초 목적인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소득증진 효과는 다소 반감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본 사업은 온누리상품권 증액 발행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금액 및 비중 증감 추이에 대해 향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수입 문제

-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4.10.) -

### 가. 현 황

○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안은 전년대비 441억 300만원이 감액된 936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다.

○ 그 중 법정부담금은「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는 부과금 수입인데, 2025년도 계획안은 전액 삭감되었다.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 법정부담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3 결산 | 2024 계획(A) | 2025 계획안(B) | 증감 | |
|---|---|---|---|---|---|
| | | | | B-A | (B-A)/A |
| 영화발전기금 수입 (총계) | 167,057 | 137,795 | 93,692 | △44,103 | △32.0 |
| 법정부담금 | 26,255 | 29,442 | - | △29,442 | 순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는 2024년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32개 부담금의 폐지·감면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의 경우 국민 체감 부담 완화[3]를 위한 정비의 일환으로 부과금 폐지를 통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3) 영화 1회 관람시 관람료 1.5만원 기준 약 500원 경감

## 나. 분석의견

○ 첫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논의 결과에 따라 2025년 영화발전기금 수입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비디오법」 제24조 및 제25조의2와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53호를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바, 부담금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이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서도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개정 법률안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정부는 2024년 7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3호)」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동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는 영화부과금은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의 성격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찬성의견도 있으나,[4] 폐지에 따른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화상영관 측의 부담만을 완화해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한 반대의견[5]도 있다.

○ 또한, 영화계에서는 동 부담금 폐지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이 폐지되거나 영화분야 지원 예산이 삭감될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4) 그 밖에 부담금은 그 부과의 목적인 특수한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집단에게만 부과되어야 하나 영화관람객은 동질성 있는 특정 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화부과금이 폐지되더라도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찬성의견의 주요 논거이다.

5) 그 외에 헌법재판소는 2008년 영화부과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영화부과금이 영화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다른 재원의 확보없이 영화부과금만을 폐지할 경우 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진다는 점 등이 반대의견의 주요 논거이다.

○ 그러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여부는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현재까지 관련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로 2025년 계획안 의결 시까지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은 8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반대의견 등에 대한 논의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후 미상정 상태이다.

○ 따라서 추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련된 법률 개정 여부에 따라 영화발전기금 수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둘째, 2025년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을 통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따른 법정부담금 수입 감소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 및 영화발전기금의 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담금 폐지를 위해서는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2023년 결산액은 262억 5,500만원, 2024년 계획액은 294억 4,200만원이다.

○ 이는 2023년 결산 기준 영화발전기금 자체수입의 88.4%, 2024년 계획 기준으로는 자체수입의 7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연도별 영화발전기금 자체수입 대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비중]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결산 | | | | 2024 계획 |
|---|---|---|---|---|---|
| | 2020 | 2021 | 2022 | 2023 | |
| 자체수입(A) | 14,934 | 20,724 | 22,434 | 29,716 | 38,449 |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B) | 10,522 | 17,086 | 17,948 | 26,255 | 29,442 |
| 비중(B/A) | 70.5 | 82.4 | 80.0 | 88.4 | 76.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2018년 1,777억원에서 2023년 4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 수입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될 경우 기금 재원 고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영화발전기금 연도별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여유자금 | 177,718 | 115,261 | 105,378 | 60,673 | 58,360 | 4,502 |

주: 여유자금은 기말잔액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도 기금 고갈 우려가 있었던 만큼 부과금 폐지와 무관하게 일반회계 및 타 기금 등 국고를 활용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6)]

○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 수입계획안에는 일반회계전입금은 편성되지 않았고, 기금전입금으로 전년대비 290억 9,700만원이 증액된 644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44억 9,700만원(전년대비 △9억 3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으로 600억원(전년대비 +3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다.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 기금전입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3 결산 | 2024 계획(A) | 2025 계획안(B) | 증감 | |
|---|---|---|---|---|---|
| | | | | B-A | (B-A)/A |
| 기금전입금 | - | 35,400 | 64,497 | 29,097 | 82.2 |
| 복권기금 전입금 | - | 5,400 | 4,497 | △903 | △16.7 |
| 체육기금 전입금 | - | 30,000 | 60,000 | 30,000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6) 기존에도 코로나19 이후 부담금 수입 감소 및 영화분야 지원을 위한 지출 확대로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어 2022년 공자기금 차입(800억원), 2023년 일반회계 전입(800억원, 공자기금 상환용), 2024년 체육기금(300억원) 및 복권기금(54억원) 전입 등 국고를 통한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즉, 전년대비 법정부담금은 294억 4,200만원이 감액되고 체육기금 전입금은 300억원이 증액된바, 사실상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을 통해 부담금 폐지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및 체육단체 육성 등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므로,[7] 체육기금 재원을 영화진흥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근본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영화발전기금은 사실상 기금 본연의 존립 목적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므로, 그 본연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등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특정한 자체 재원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기금 신설 시 ①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 ②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러나 부담금 폐지 후 일반회계 또는 타 기금 전입금에 수입을 의존하게 된다면, 기금의 재원이 영화진흥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담보하기도 어려운바, 기금 설치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따라 법정부담금 수입이 없어질 경우 타 기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 외에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확보하고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 (2025년 예산안 분석 / 2024.10.) -

## 가. 현 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조 4,062억 2,900만원이 증액된 72조 2,79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3 결산 | 2024 예산(A) | 2025 예산안(B) | 증감 | |
|---|---|---|---|---|---|
| | | | | B-A | (B-A)/A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65,363,666 | 68,873,209 | 72,279,438 | 3,406,229 | 4.9 |
| 보통교부금 | 63,416,456 | 66,338,469 | 69,659,572 | 3,321,103 | 5.0 |
| 특별교부금 | 1,947,210 | 2,534,740 | 2,619,866 | 85,126 | 3.4 |
| -지역현안 | 458,158 | 600,426 | 743,713 | 143,287 | 23.9 |
| -재난안전관리 | 152,719 | 200,142 | 247,905 | 47,763 | 23.9 |
| -국가시책 | 1,336,333 | 1,200,852 | 1,067,409 | △133,443 | △11.1 |
| -디지털교육혁신 | - | 533,320 | 560,839 | 27,519 | 5.2 |

자료: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내국세의 20.79%와 국세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로 조성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고, 특별교부금은 다시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를 합산한 금액이며,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별교부금은 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②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③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세분되는데, 재원규모는 각 유형별로 특별교부금 총액의 60%, 30%, 10%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조항(제5조의3)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이 2023년 12월 21일 의결(2024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3.8%로 조정하고, 인상한 0.8%p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2024년 5,333억원)을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2025년 예산안에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3조 3,211억 300만원이 증액된 69조 6,595억 7,200만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은 1,432억 8,700만원이 증액된 7,437억 1,300만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은 1,334억 4,300만원이 감액된 1조 674억 900만원,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은 275억 1,900만원이 증액된 5,60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다.

○ 2025년 예산안에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이 감액 편성된 것은 2023년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2025년 예산에서 정산 조정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

(단위: 억원)

| 사업명 | 2023 | | | | 2025 | |
|---|---|---|---|---|---|---|
| | 본예산 | 교부액 | 정산액 | 최종 | 법정배분 비율 | 예산안 |
| 특별교부금 | 22,272 (100%) | 19,472 (100%) | △441 | 19,030 (100%) | 100.0% | 26,197 (100.0%) |
| -지역현안 | 6,681 (30%) | 4,582 (23%) | 1,128 | 5,709 (30%) | 23.7% | 7,437 (28.4%) |
| -재난안전관리 | 2,227 (10%) | 1,527 (8%) | 376 | 1,903 (10%) | 7.9% | 2,479 (9.5%) |
| -국가시책 | 13,363 (60%) | 13,363 (69%) | △1,945 | 11,418 (60%) | 47.4% | 10,674 (40.7%) |
| -디지털교육혁신 | - | - | - | - | 21.1% | 5,608 (21.4%) |

자료: 교육부

## 나. 분석의견

○ **국가재정 전체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5년에 종료되므로 교부금 개편 논의는 유보통합 추진과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국세교육세는 2018년부터 누리과정 재원분담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고등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 국세교육세 세입액은 6조 402억원이며, 이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조 7,022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조 1,690억원,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으로 2조 1,69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5년 국세교육세 세입액 배분 현황]

| | 국세교육세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통교부금) |
|---|---|---|---|---|
| '25년 예산안 | 6조 402억원 (a) | 1조 7,022억원 (b) | 2조 1,690억원 (c) | 2조 1,690억원(a-b-c)<br>※ '23년 교육세 교부금 정산분 4,130억원 별도<br>[참고] 내국세분은 보통교부금은 67조 776억원, 특별교부금 2조 6,197억원 |
| 법적 근거 | 교육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 산정식 | 교육세 세입액 전체 |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 국세교육세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제외한 금액의 50% |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 |
| 일몰 시기 | | 2025년 (2017년 개정, 2019년 연장) | 2025년 (2022년 개정)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종료 시 국세교육세 전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 |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25년까지 효력을 가져 누리과정 및 고등교육 재원조달을 위해 국세교육세를 활용하는 규정이 2025년에 종료되므로, 유보통합 추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산정방식은 산업화시기에 투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그 경직성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재원배분,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불균형적인 재원배분,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고 교부금 개편 논의 안에서 누리과정 및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경직성으로 인해 재정운용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시·도교육청 재정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시·도교육청은 내국세 감소 시기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교부금이 증가한 만큼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하여 기금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기금수는 2016년 9개에서 2023년 54개로 확대되었으며 연도말 적립액은 같은 기간 2,179억원에서 18조 7,09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2017년 12.1조원에서 2022년부터 전액 상환한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 채무 규모는 동 기간 627.4조원에서 1092.5조원으로 증가하여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환경 개선 여건과 별개로 증가하는 구조이며, 교육 부문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규모는 학생수와 같은 교육수요 지표 변동과는 무관하게 내국세 및 교육세 규모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10년 동안(2015~2024년) 1.7배로 증가한 반면,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수는 같은 기간 8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1배로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2015~2024년]

(단위: 억원, 만명, 만원)

|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394,056 | 431,615 | 465,910 | 524,528 | 605,305 | 535,431 | 603,371 | 812,976 | 653,637 | 688,732 |
|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수 | 620 | 602 | 583 | 570 | 556 | 544 | 535 | 532 | 526 | 520 |
|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635 | 716 | 799 | 920 | 1088 | 985 | 1,128 | 1,528 | 1,241 | 1,324 |

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교부기준(세계잉여금, 추경예산 포함)
자료: 교육부

- 2021년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2020년(3.3%) 대비 0.1%p 상승하여,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 한편,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2020년(0.7%)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고등교육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장학금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지출을 정부부담에 포함하는 초기 재원 기준으로는 0.9%로 2020년(0.9%)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OECD 평균과의 격차가 최종 재원 기준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기준연도 2021년]

(단위 : %)

| 구 분 | 초·중등교육 | | | 고등교육 | | | 초등~고등교육 | | |
|---|---|---|---|---|---|---|---|---|---|
| | 정부 | 민간 | 합계 | 정부 | 민간 | 합계 | 정부 | 민간 | 합계 |
| 한국 | 3.4 | 0.2 | 3.6 | 0.7 | 0.9 | 1.5 | 4.1 | 1.1 | 5.2 |
| (초기 재원) | (3.5) | (0.2) | (3.6) | (0.9) | (0.6) | (1.5) | (4.4) | (0.8) | (5.2) |
| OECD 평균 | 3.2 | 0.3 | 3.4 | 1.0 | 0.5 | 1.5 | 4.2 | 0.8 | 4.9 |
| (초기 재원) | (3.2) | (0.3) | (3.4) | (1.0) | (0.3) | (1.5) | (4.3) | (0.6) | (4.9) |

주: 1. OECD 교육지표는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을 정부부담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초기재원' 기준과 이를 민간 부담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최종재원' 기준의 두 가지 값을 보고하고 있음
2. 동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자료: 교육부

- 2021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4,873, 중등 $19,299로 OECD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3,57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③ 교부금이 세수 연동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세수 규모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수 예측 오차로 추경 편성, 정산, 불용 등을 통한 연도 중 변동액이 확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에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정부가 최근 10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16년, 2017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며, 세입 증액경정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된 해는 2016년, 2017년, 2021년, 2022년 4회이다. 또한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 정산은 2017~2022년 동안 매년 이루어졌다. 2023년에는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세수재추계를 통해 10조원이 넘는 교부금을 미배정한 후 불용처리하였다. 정부는 2024년에도 9월 26일 세수재추계를 통해 29.6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며,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재정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교부금의 최종교부액과 본예산의 차이는 확대되고 있어, 본예산과 최종교부액 간 차이가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이후 두 자리수(2021년 13.4%, 2022년 25.0%, 2023년 △13.7%)를 기록하고 있다.


의회